총 무 처

국무총리지시 제 5 호 (720-2064) 1989. 3. 23.
(5년)

수 신 수신처참조

제 목 '89년도 행정제도개선계획 및 추진지침 시달

1. 정부는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중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편익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행정환경은 민주화·자율화·개방화시대의 전개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압력과 국제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일층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여건과 미래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국가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는 그 근간이 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2. 이를 위하여 정부는

첫째,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비민주적인 법령등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둘째, 사회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계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한편,

셋째,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간여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신장시켜 나감과 아울러,

넷째, 각종 기본행정제도와 행정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국가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이와같은 기본방향 아래, '89년도 "행정제도개선계획 및 추진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행정제도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과정에서 각 부처는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민주화, 지방화, 자율화, 개방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나. 또한 제도개선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등을 통하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는 개선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홍보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업무집행 세부요령을 주지시켜 개선제도의 시행등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미 선정된 과제이외에도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89년도 행정제도개선계획 및 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10, 11, 15-18, 20-35, 40, 41, 43, 44, 46-53)
나(01-06, 10-18), 다(01-06, 10-18).

1989 年 度

制度改善計劃 및 推進指針

5

1989. 3.

總 務 處

目　　次

Ⅰ. 基本目標 및 改善方向 …… 1

1. 基本目標 …… 1

2. 改善方向 …… 1

Ⅱ. '89 年度 推進計劃 …… 2

1. 課題選定 …… 2

2. 課題推進 …… 3

3. 事後管理 …… 3

4. 推進課題 內譯 …… 5

Ⅲ. 行政事項 …… 8

1. 制度改善 作業日程 …… 8

2. 制度改善 推進 …… 8

3. 制度改善과 提案制度와 連繫 …… 10

4. 制度改善 推進狀況 報告 …… 10

5. 制度改善作業 推進上의 留意事項 …… 11

(別添資料)

'89 年度 行政制度改善 課題 …… 19

Ⅰ. 基本目標 및 改善方向

1. 基本目標

民主化・開放化・地方化時代에 副應한 關聯 制度의 改善으로 國政指標의 效率的 推進

2. 改善方向

○ 民主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 國民便益增進을 위한 制度改善
- 非民主的・非能率的인 制度改善

○ 國民和合을 위한 制度改善

- 社會의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 庶民苦衷 解決을 위한 制度改善

○ 自律化・開放化・地方化에 따른 制度 定立

- 民間部門의 自律基盤 擴大
- 行政規制의 大幅 縮小와 公正性 確保
- 地方自治制 實施에 對備한 關聯制度 整備

Ⅱ. '89年度 推進計劃

1. 課題選定

○ 選定基準

· 主要政策課題

－ 多數部處에 關聯된 課題

－ 主要政策의 變更을 隨伴하는 課題

－ 對國民 波及效果가 큰 課題

· 部處 一般課題

－ 部處 業務와 關聯된 課題

○ 選定節次

· 改善候補課題 發掘：各部處, 總務處

－ 國民 各界各層의 多樣한 輿論 收斂

－ 關聯部處間 有機的인 協議・調整

· 審議・調整・確定：制度改善委員會

2. 課題推進

○ 各部處 '89年度 主要業務計劃에 反映, 推進

○ 關聯部處·利害當事者등의 充分한 意見 收斂

○ 效率的인 制度改善을 위한 推進體制의 確立

3. 事後管理

○ 制度改善에 따른 早速한 法令化 措置

— 各部處 長官責任下에 當該年度內 推進

— 法律改正은 '89年度 法制處의 立法推進計劃에 反映. (臨時國會 最大 活用)

○ 改善된 制度의 施行前에 細部業務處理指針 示達

— 改善案 確定 施行과 同時에 一線機關에 示達

— 改善內容 및 業務處理 要領(變更된 書式, 處理節次등)

○ 改善制度의 履行實態 指導·點檢 强化

- 各部處 : 自體監査를 통한 年中 持續的인 指導·點檢
- 總務處 : 履行實態 確認·點檢
  - 確認方法 : 市·道別로 確認班을 編成하여 일선 行政機關의 履行實態 現場點檢
  - 措置計劃
    - 改善制度의 施行上 問題點 및 副作用 把握
    - 未洽하고 補完을 要하는 部分에 대한 補完措置

○ 改善制度의 定着을 위한 對國民 弘報 徹底

- 改善된 制度는 背景과 內容을 對國民 弘報 및 啓導 徹底

4. 推進課題 內譯

가. 主要政策課題

部處別	課題名	課題數
計		11
總務處	○ 公務員 試驗制度 改善 ○ 公務員 名譽退職制度 改善 ○ 雇傭職 公務員制度 改善 ○ 各種 行政罰則의 改善	4
外務部	○ 未修交國과의 人事交流 許可節次 簡素化	1
財務部	○ 關稅還給制度 改善	1
體育部	○ 體育施設 管理制度 改善	1
水產廳	○ 漁民福祉 增進關聯 水產行政 制度 改善	1
建設部	○ 都市駐車場制度 改善	1
서울特別市	○ 地方稅 免稅點 引上 ○ 事業所稅 稅率構造 改善	2

나. 一般課題

部處別	課題名	課題數
計		**126**
經濟企劃院	○ 韓國標準產業分類制度 改善등	4
總務處	○ 政府組織 關係法令 整備등	2
科學技術處	○ 外國技術用役 發注 承認制度 改善등	2
國家報勳處	○ 傷痍等級分類의 細分化등	2
外務部	○ 旅券發給業務의 地方委任등	2
內務部	○ 消防檢査制度 改善등	6
財務部	○ 國有財產 使用料率 調整등	13
法務部	○ 居住(移民)旅券所持者의 出國制度 改善등	8
國防部	○ 軍用裝備 免許制度改善등	7
文教部	○ 學校生活記錄簿 評價·記錄方法 改善등	2
農林水產部	○ 多年生 作物 栽培許可制度 改善등	18
商工部	○ 中小企業 創業節次 簡素化등	11
動力資源部	○ 아스팔트 品質管理制度 改善등	7
建設部	○ 共同住宅 하자보수제도 改善등	4
保健社會部	○ 新規食品接客業營業者의 事前衛生 教育制度 改善등	7
勞動部	○ 國外就業勤勞者 送出許可制度 改善등	3
交通部	○ 自動車廢車業 許可制度 改善등	15
遞信部	○ 障碍者등에 대한 通信料金 減免制度 新設등	8
文化公報部	○ 社會團體登錄에關한 法律 改·廢등	2
서울特別市	○ 屋上廣告物 設置規制 緩和등	3

※ 廳은 主務部에 包含

（參考）

'89 年度 部處別 改善對象課題 現況

區分 / 機關別	總計			'89 年度課題			'88 繼續課題		
	合計	主要	一般	小計	主要	一般	小計	主要	一般
計	**137**	**11**	**126**	**122**	**9**	**113**	**15**	**2**	**13**
經濟企劃院	2		2	1		1	1		1
調達廳	2		2	2		2			
總務處	6	4	2	5	4	1	1		1
科學技術處	2		2	2		2			
國家報勳處	2		2	2		2			
外務部	3	1	2	2	1	1	1		1
內務部	6		6	6		6			
財務部	5	1	4	5	1	4			
國稅廳	4		4	4		4			
關稅廳	5		5	5		5			
法務部	8		8	8		8			
國防部	4		4	2		2	2		2
兵務廳	3		3	3		3			
文教部	2		2	2		2			
體育部	1	1					1	1	
農林水產部	7		7	7		7			
農村振興廳	1		1	1		1			
山林廳	7		7	5		5	2		2
水產廳	4	1	3	3		3	1	1	
商工部	10		10	7		7	3		3
工業振興廳	1		1	1		1			
動力資源部	7		7	7		7			
建設部	5	1	4	5	1	4			
保健社會部	5		5	5		5			
環境廳	2		2	2		2			
勞動部	3		3	1		1	2		2
交通部	7		7	7		7			
鐵道廳	4		4	3		3	1		1
海運港灣廳	4		4	4		4			
遞信部	8		8	8		8			
文化公報部	2		2	2		2			
서울特別市	5	2	3	5	2	3			

Ⅲ. 行政事項

1. 制度改善 作業 日程

區 分	日 程
○ 改善課題 選定	○ '89.1 ～ 2
○ 改善案 確定	○ '89. 3 ～ 12
· 改善試案 作成	
· 關聯機關 協議	
· 制度改善委·國務會議上程, 審議·確定	
○ 關聯法令 整備	○ '89. 3. ～ 12

2. 制度改善 推進

가. 主要政策課題

○ 改善案 確定 : 關聯機關 協議

○ 制度改善委員會 上程

- 上程案件은 國務會議 上程案件에 準하여 作成하되 表紙課題名 下段에 「制度改善 主要政策課題」를 表示
- 上程案件 90部를 總務處에 提出
- 制度改善委員會에서 審議·確定

○ 國務會議 上程

- 國務會議 上程案件은 各部處에서 準備하되 制度改善委員會 審議結果를 反映하여 上程

나. 部處 一般課題

○ 部處 自體에서 改善案 確定·施行 및 法令整備 推進

○ 制度改善委員會에 上程하여 審議·措置할 必要가 있는 경우 "主要政策課題" 處理要領에 準하여 審議·確定할 수 있음.

○ 改善(案)을 確定·實施한 課題는 主要改善內容 및 關聯 措置事項을 別添書式 '다'에 依據 作成·通報

3. 制度改善과 提案制度와 連繫

가. 目 的

職務提案으로 適用可能한 優秀改善課題를 選定·採擇하여 褒賞을 實施함으로써 制度改善作業에 活力素 賦與

나. 推薦範圍

○ 制度改善 課題로 推進 實施하여 改善完了된 各部處 主要政策課題 및 一般課題中에서 選定

○ 行政能率의 向上, 豫算節減등 改善效果가 큰 課題는 提案制度에 依한 褒賞實施

4. 制度改善 推進狀況 報告

가. 對象機關

○ 各院·部·處·廳·서울特別市

나. 分期別 推進狀況 報告

○ 各 中央行政機關長 및 서울特別市長은 每分期 翌月 5 日까지 總務處에 推進狀況 提出

○ 報告事項

- '89 年度 制度改善課題 推進狀況(書式"가")
- 部處別 法令整備 推進狀況(書式"나")
- 制度改善完了課題 結果通報(書式"다")

※ '89 年度 1/4 分期 推進實績을 5 月 1 日까지 報告(書式"가")

5. 制度改善作業推進上의 留意事項

가. 改善作業의 愼重한 마무리

○ 有關機關間 充分한 協議·調整을 거쳐 改善作業 推進

○ 關聯機關은 制度改善案을 迅速하고 誠實하게 協議·調整

○ 各界 專門家등의 폭넓은 參與를 誘導하고 充分한 硏究·檢討를 거쳐 愼重하게 改善案 確定

나. 改善作業의 管理徹底

○ 課題別로 "카드화"하여 改善作業의 效率的 管理

- 各部處는 課題別로 "카드"를 作成하여 改善作業 推進

※ "카드"書式은 旣存書式에 依함.

○ 定期的으로 推進狀況 自體點檢·確認 實施

〈書式 가〉

制度改善課題 推進狀況

課 題 名:　　(主管部署:　　局　　課)

(完了豫定:　　'89.　.　.)

改 善 方 向	細 部 推 進 日 程

分 期 中 推 進 實 績	不振事由및對策

※ (作成要領:뒷면참조)

〈 작성요령 〉

1. 개선방향 : 주요개선방향을 항목별로 약술합니다.
2. 세부추진일정 :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입안, 관련기관협의 · 국무회의등) 을 기입합니다.
3. 분기중 추진실적 : 분기중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4. 부진사유 및 대책 :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書式 나〉

法令整備 推進狀況

課 題 名: (年度課題) (主管部署: 局 課)

(完了豫定: '89. . .)

法令名	改正要旨	推進日程					推進狀況	
		立案	協議	國務會議	國會	施行	實績	日字

不振事由 및 對策

※(作成要領: 뒷면참조)

〈 작성요령 〉

① 법 령 명 : 법률, 대통령령, 부령 기타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② 개정요지 : 개선안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추진상황이 다를 경우 항목을 분리 기재합니다.

③ 추진일정 : 법령정비작업의 완결계획을 분기별로 기재합니다.

④ 추진상황 : 입안, 관계부처협의, 당정협의, 법제처제출 및 심의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통과, 대통령결재, 국회상정 · 통과, 공포, 시행등을 일자와 함께 기입합니다.

〈書式　다〉

制度改善完了課題　結果通報

課題名　　（主管部署：　　局　　課）

（改善目的）

（改善內容）

（法令整備事項）

（推進狀況）

※（作成要領：뒷면참조）

〈 작성요령 〉

1. 서식 작성목적 : 정부의 행정제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처별 개선완료과제의 주요개선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국민, 관련기관 및 단체와 일선행정기관에 홍보하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서식 작성방법 : '89년도 각 부처별 추진과제중 개선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 추진상황을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 개선목적 : 과제의 선정배경·개선에 따른 대국민 파급효과등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개선내용 : 주요개선내용을 항목별로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법령정비사항 : 개선내용 시행을 위해 정비한 법령 개·폐사항의 내용 및 조항을 (신·구조문 대비) 기재합니다.

○ 추진상황 : 개선시안 확정, 관계부처협의, 공청회등 각계의 의견청취,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관계법령개정등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재합니다.

主 要 政 策 課 題

부 처 별 목 차

(주요정책과제)

1. 총 무 처 23

2. 외 무 부 30

3. 재 무 부 31

4. 체 육 부 33

5. 수 산 청 35

6. 건 설 부 37

7. 서울특별시 38

총 무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공무원시험 제도 개선	〈실 태〉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법시험 및 고등고시 제도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이 미흡한 실정임. ○ 5급승진시험제도의 불합리 - 장기간 수험준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가중 - 행정업무의 공백초래 ○ 공무원 채용시험시 남·여를 구분 모집함으로써 남·여 고용평등에 배치 ○ 심신장애자 별도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미흡 ○ 공무원 채용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점제도의 구축 미흡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가점제도의의 상실	법 무 부 대 법 원 전 부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사법시험 및 고등고시제도의 개선 –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단계적으로 여론을 수렴·추진 ○ 5급공무원 승진시험제도 개선 –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추진(객관식방법, 자격시험제, 교육평가제등) ○ 남·여 구분 모집제도 개선 – 성별 구분모집제도 폐지 ○ 심신장애자 별도채용근거 신설 ○ 채용시험 가점제도 개선 – 주산, 타자자격증 가점제도의 재조정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혜택 부여 〈관계법령〉 ○ 사법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2. 공무원명예퇴직제도 개선	〈실 태〉 ○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기회의 희소 –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잔여기간이 일반퇴직은 1년이상 5년이내, 상병퇴직은 5년이상 10년이내로 한정 – 신청기회 : 년 1회 실시 ○ 실질적 혜택없는 명예 특별승진제도의 시행 – 특진과 동시에 퇴직 – 특진전 계급으로 수당액 산출 〈개선방향〉 ○ 명예퇴직 신청범위의 확대 실시 – 20년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로 조정(일반·상병 통합) – 신청기회 : 년 2회 정기운영 ○ 명예특별승진자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 – 특진과 동시에 퇴직	경제기획원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특진된 계급으로 수당액 산출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3. 고용직공무원 제도개선	〈실 태〉 ○ 고용직 공무원 정·현원 · 정원 : 99,518명 · 현원 : 90,295명 – 1종 : 34,600명 – 2종 : 50,820명 – 경노무(사환) : 4,875명 ※ 전체공무원의 12.8% ○ 고용직, 기능직간의 직무범위 불분명 ○ 종별 구분기준의 불합리 ○ 직명관리의 불철저 ○ "고용직"명칭에 대한 불만 등 〈개선방향〉 ○ 고용직중 기능직 전환대상 검토	전 부 처

	- 기능직으로의 전환 범위 - 기능직으로의 채용등급 - 기능직의 직급표 조정 - 특별채용요건 미비자에 대한 조치 - 고용직 직명 구분의 폐지 - 징계양정의 추가 〈관계법령〉 ○ 고용직공무원규정 ○ 공무원임용령	
4. 각종 행정 벌칙의 개선	〈실 태〉 ○ 행정벌의 유형 · 행정형벌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행정질서벌 - 행정상의 질서문란에 대한 제재 : 과태료 · 조례에 의한 과태료	전 부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부정한 수단으로 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그 금액의 5배이내 과태료) – 공공시설의 부정사용(50만원 이내의 과태료) ○ 벌칙은 각부처별로 개별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하여 시행 – 총 428개법률에 5,500여개 사항 규정 ○ 단순한 신고의무위반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지나친 엄벌주의로 많은 국민이 전과자화 하는 폐단 발생 –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 초래 ○ 벌칙산정기준의 현실성 결여 ○ 법제정 당시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벌칙조항을	

	만듬으로써 관련 법령간 불균형 초래 ○ 행정벌칙의 형량이 현실과 불합리하게 과경하여 실효성 확보 곤란 〈개선방향〉 ○ 과도한 행정형벌은 과태료로 전환 – 단순한 신고의무위반등 경미한 사항 ○ 불합리한 벌칙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법령 상호간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칙 조정 ○ 과경한 형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주민등록법, 양곡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광산보안법, 유선 및 도선업법, 지방자치법 등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미수교국과의 인사교류 허가절차 간소화	〈실 태〉 ○ 미수교국과의 인사교류 허가절차 관련규정의 상이로 민원인들의 불편 및 부담가중 – 목적별(상용·비상용) 절차 상이 – 국가별(중국·소련등 동구국가) 절차 상이 – 미수교국 인사의 방문초청절차와 아국기업의 미수교국 방문허가 신청 창구 상이 〈개선방향〉 ○ 북방정책추진 및 대공산권 인적 교류 확대 추세등을 감안, 상이한 지침을 종합하여 단일지침으로 개선 〈관계법령〉 ○ 중국관계 "한·중국 교류업무조정" ○ 특수지역 출입국 절차요령	안전기획부 경제기획원

재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관세환급 제도개선	〈실 태〉 ○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년도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실시 – 선환급 후정산 제도 – 평균세액 증명제도 –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인하 제도 – 기장상계제도 등의 보완제도 실시 ○ 수출산업 지원일변도 정책의 부작용 – 수출의 내실화 미흡 – 내수산업의 균형 성장 저해 ○ 교역증대와 흑자관리 필요성 대두 – 대외개방 압력 심화 – 지역별 무역 불균형 현상 ○ 지원제도의 비용과중 – 사회적 비용 가중 – 행정의 비능률 초래	관 세 청 한국무역협회 등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개선방향 〉 ○ 환급제도, 상계제도, 보세공장 제도등 수출지원 관세제도간의 유기적 조화와 기능 특화 ○ 수출의 내실화 유도 – 환급대상수출 및 원재료의 범위 재조정 – 외화가득율등에 의한 환급 차등화 〈 관계법령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 동법시행령	

체 육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체육시설관리 제도개선	〈실 태〉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 체육시설 관장부서의 다원화로 전문적인 체육시설 관리 곤란 · 주관부서 분산 –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장, 스케이트장등 · 주관부서 부재 – 보울링장, 테니스장, 로울러 스케트장등 〈개선방향〉 ○ 체육시설에 대한 관장부처의 일원화 ○ 체육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계적 입법제정 · 1단계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정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문 교 부 교 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주관부서가 없는 보울링장, 테니스장등과 주관부서에서 이관 동의한 시설(수영장, 골프장)에 대한 지도·감독 –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행정 지도 실시 • 2단계 : 정부기능의 조정등을 통한 체육시설 관리의 일원화를 점차적으로 추진 〈관계법령〉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정	

수 산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어민복지증진 관련 수산 행정제도 개선	〈실 태〉 ○ 어촌 양식장을 일부 수산업자가 장기 점유함으로써 다수어민 참여 곤란 ○ 양식기술, 자본이 크게 소요되는 사업은 어촌계의 자력개발 곤란 ○ 해태등 종묘생산업을 허가제로 운영함으로써 어민불편 초래 〈개선방향〉 ○ 다수 어민의 소득·복지향상을 위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 – 양식어업 신규면허 및 면허 갱신시 마을 지선 어장의 경우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을 최우선 순위화 –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은 어촌계 우선 면허 – 고도의 양식기술과 경험, 대규모	농림수산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자본이 필요한 품종은 어촌계를 포함한 개발능력자에게 면허 ○ 수산종묘생산업중 해태종묘배양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제도의 개선 – 일반어민의 수산양식어업에 대한 생산규제 위주의 승인제 폐지 – 연안어장 목장화등의 제도로 전환검토 ○ 양식어업별 구분 조정(해저이용, 해수면이용)에 의한 면허방안 강구 – 보편기술품종 : 어촌계 우선 〈관계법령〉 ○ 수산업법	

건 설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도시주차장 제도개선	〈실 태〉 ○ 자동차 보급율의 급증(연평균 148만대)에 비해 공공주차장이 절대부족하여 도시주차난 극심 〈개선방향〉 ○ 공공주차장 확충방안 수립 – 각급 도시별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및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 시행 – 도시 재개발사업시 공공주차장 우선확보 –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운용 ○ 민영주차장 설치촉진 유도 – 주차요금 자율화 – 주차장설치 및 폐지절차 간소화 – 주차빌딩 설치시 건축제한 완화 ○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효율 증진방안 강구 〈관계법령〉 ○ 주차장법 ○ 지방세법	내 무 부 교 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지방세면세점 인상	〈실 태〉 ○ 현행 지방세 면세점은 '79년도 법령개정사항으로 그후 건물과표가 '79년도에 비해 61.3%인상 되었음. · 현행 지방세 면세점 – 취득세 : 취득가액 30만원 이하 – 재산세 : 재산가액 30만원 이하 – 주민세 : 소득할 주민세액 500원 이하 ○ '79년도를 기준으로 건물과표는 61.3%인상 되었으나 면세점은 인상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고, 저소득층의 면세범위 확대 추세에 미흡 〈개선방향〉 ○ 현행 지방세면세점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강구 – 취득세 : 취득가액의 50만원 이하	내 무 부

	– 재산세 : 재산가액의 50만원 이하 – 주민세 : 소득할 주민세액 1,000원 미만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3조, 제179조, 제185조	
2. 사업소세 세율구조 개선	〈실 태〉 ○ 도시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현행 세율구조는 '76년도에 제정된 세율임.	내 무 부

구 분	대 상	세 율
재산할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3.3㎡당 500원
종업원할	50인초과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재산할은 대도시와 지방간의 행정수요 유발 효과에 대한 차이를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반영치 않은 단일세율로 현시점에서 보면 너무 낮은 세율로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향〉 ○ 종업원할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산할 세율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 · 재산할 세율	

구 분	세 율
인구500만이상 시	3.3㎡당 2,000원
인구 50만이상 시	3.3㎡당 1,500원
기 타 시	3.3㎡당 750원
군 이 하	3.3㎡당 400원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48조

部 處 一 般 課 題

부 처 별 목 차

(부처일반과제)

1. 경 제 기 획 원 ····· 45
2. 조 달 청 ····· 48
3. 총 무 처 ····· 51
4. 과 학 기 술 처 ····· 54
5. 국 가 보 훈 처 ····· 60
6. 외 무 부 ····· 64
7. 내 무 부 ····· 66
8. 재 무 부 ····· 72
9. 국 세 청 ····· 77
10. 관 세 청 ····· 82
11. 법 무 부 ····· 88
12. 국 방 부 ····· 97
13. 병 무 청 ····· 103
14. 문 교 부 ····· 107
15. 농 림 수 산 부 ····· 109
16. 농 촌 진 흥 청 ····· 116
17. 산 림 청 ····· 117
18. 수 산 청 ····· 126

19. 상 공 부 ····· 129
20. 공 업 진 흥 청 ····· 138
21. 동 력 자 원 부 ····· 139
22. 건 설 부 ····· 146
23. 보 건 사 회 부 ····· 150
24. 환 경 청 ····· 155
25. 노 동 부 ····· 157
26. 교 통 부 ····· 162
27. 철 도 청 ····· 170
28. 해 운 항 만 청 ····· 174
29. 체 신 부 ····· 179
30. 문 화 공 보 부 ····· 189
31. 서 울 특 별 시 ····· 192

경제기획원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한국표준 산업분류 제도개선	〈실 태〉 ○ 통계법 제 11 조(통계자료의 분류) 규정에 의거 각종 통계자료의 국·내외 상호비교성과 시계열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1963 년도에 제정 시행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9 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2)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5 자리 이하 분류는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 5 차에 걸쳐 개정('84. 1.26, 5 차개정)하였으나,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향〉 ○ 현재 입수된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 최종 시안을 분석·검토하고 이와	

<table>
<tr><th>과 제 명</th><th>실 태 및 개 선 방 향</th><th>관련부처</th></tr>
<tr><td>2. 국가기본통계 기능의체계화</td><td>관련된 국내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제도 개정

〈관계법령〉
○ 통계법 제 11 조
○ 경제기획원 고시 제 71 조

〈실 태〉
○ 각종통계를 비전문기관에서 분산 작성

<table>
<tr><th>구 분</th><th>작성기관수</th><th>통 계 수</th></tr>
<tr><td>중앙행정기관</td><td>28</td><td>234</td></tr>
<tr><td>지방행정기관</td><td>13</td><td>10</td></tr>
<tr><td>공 공·민 간</td><td>42</td><td>96</td></tr>
<tr><td>합 계</td><td>83</td><td>340</td></tr>
</table>

– 행정통계에 대한 경시풍조의 일반화
– 전문인력의 부족과 수인제도의 미비</td><td>총 무 처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노 동 부
한 국 은 행</td></tr>
</table>

	- 통계정보의 상호교환과 집중관리 곤란 - 불실한 기본통계작성으로 인한 정책의 시행착오의 소지 〈개선방향〉 ○ 통계전담 독립기구 설치 ○ 통계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및 통계작성기법 개선 ○ 통계직인사 및 보수제도를 개선하고 통계전문인력 양성방안 강구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관련 통계작성기관 직제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리스계약 제도개선	〈실 태〉 ○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지정제에 대한 리스업계의 자율조정 요구증대 • 정부부문 리스계약업체 현황 – 종합금융사 : 6개사 – 리스전업회사 : 9개사 ○ 외자리스자금 조달을 위한 소요외자 대출시 공공기관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인 60%을 적용받고 있어 리스업체의 외화자금 부족에 따라 리스가산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음 ○ 현행 리스계약조건에는 규정손해금에 대한 조항이 없어 계약해지등에 따른 선의의 손해 발생 우려 〈개선방향〉 ○ 리스업체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한 신용장 개설허용	재 무 부

	○ 리스계약조건에 규정손해금의 명문화 ○ 외화리스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외화 대출시 공공기관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인 80%로 상향조정 〈관계법령〉 ○ 리스계약조건 개정	
2. 지명경쟁입찰 참가승락서 징구폐지	〈실 태〉 ○ 지명경쟁입찰에 부하는 경우 - 지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인이상의 입찰자를 지명, 3인이상의 지명수락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지명입찰 참가여부확인을 위하여 지명경쟁입찰참가승락서 징구 (입찰전일까지) - 모든 경쟁입찰 참가희망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전일까지 납부 ○ 지명입찰 참가여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확인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입찰참가승락서를 징구함으로서 업계 불편초래 〈개선방향〉 ○ 지명경쟁입찰시 입찰참가승락서 징구생략 〈관계법령〉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28 조	

총 무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정부조직 관계법령 정비	〈실 태〉 ○ 조직간 인력활용의 경직성 초래 ○ 조직간 기능과 업무의 연계성 부족 ○ 법령의 과다와 절차의 번잡에 따른 적기 대처 곤란 – 정부조직직제 : 179개 직제 (중앙 40, 부속기관 112, 특별지방행정기관 27) 〈개선방향〉 ○ 유사기관 조직법령의 일원화 및 통·폐합 – 유사정원의 통합관리 – 하부조직의 융통성 부여 ※ 행정개혁작업과 연계하여 병행추진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및 각기관 직제	전 부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2. 정부공문서 기본규격개선	〈실 태〉 ○ 정부공문서 기본규격 — 190 × 268 ㎜ (16절지) ○ 각종서식의 규격 — 16절지 및 16절지를 배수로 확대 및 축소한 규격사용 ※ 정부공문서 용지규격은 16절지 계통, 한국공업표준규격은 A열계통, B열계통 등으로 다양화 〈A열 : 210 × 297 ㎜ (A4), B열 : 176 × 250 ㎜ (B5)〉 ○ 공문서 규격이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어 국제규격과 불일치 ○ 공문서규격과 사무자동화기기 사용규격이 상이하여 사무자동화기기 활용 곤란 ○ 서식체계의 이원화로 문서보관 및 편철불편	각 부 처

	〈개선방향〉 ○ 정부공문서 기본규격 조정 – 공문서규격을 사무자동화기기 적응규격으로 표준화 ※ 기본규격 : A4 (210 × 297 ㎜) ○ 공문서 편철관리 체계에 맞도록 분야별, 용도별로 규격을 통일하여 단순화 〈관계법령〉 ○ 정부공문서규정 및 동시행규칙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외국기술용역 발주승인제도 개선	〈실 태〉 ○ 외국기술용역발주 승인제도는 국내기술 용역을 보호육성하며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외국용역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제도 채택 ○ 발전소 보수공사의 경우 외국기술용역 필요시 동력자원부장관을 경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 후 시행 ○ 돌발사고에 대한 적기 대처 곤란으로 설비의 효율적운영에 지장초래 〈개선방향〉 ○ 돌발사고 및 긴급보수의 경우 — 외국기술용역 도입을 동력자원부 장관이 사업의 대강을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사후승인제 도입	동력자원부

	– 원자력발전소보수등 시기의 적절성 확보가 중요한 업무등에 대하여는 기술검토를 생략(현행 승인 소요기간 : 30 일)하는등 효율적인 방안 강구 〈관계법령〉 ○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 13 조	
2. 환경방사선(능)감시체계 개선	〈실 태〉 ○ 환경방사선(능)감시 대상시설 – 고리원자력 발전소(경남) – 월성원자력 발전소(경북) – 영광원자력 발전소(전남) – 울진원자력 발전소(경북) ○ 환경방사선(능)감시체계 – 사업자(한국전력)의 자체환경 감시업무 수행 – 정부차원의 독립적인 환경감시 업무는 과학기술처가 주관하여 원자력안전센터에 위임 수행 ○ 환경방사선(능)감시내용	총 무 처 내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환경감마 방사선량률 및 직접 선량측정 - 공기중 미립자, 토양, 솔일, 매수, 어패류등 15개항목에 대한 전베타 방사능, 감마 동위원소 핵종분석, H-3, I-131등 분석 ○ 환경영향 평가체계 - 사업자의 환경감시결과와 원자력 안전센터의 환경감시결과를 종합 비교·평가 - 사업자는 매년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에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센터에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국민이해(Public Acceptance) 정책 필요성 대두 - 현재까지 대국민홍보정책 및 원자력관련 자료의 완전공개 일부	

미흡

-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구심 제기
- 외국(일본, 미국)의 경우 주민이 직접참여 환경감시활동을 관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업자와 중앙행정부처에서만 환경감시활동 수행

〈개선방향〉

○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감시기능 부여

- 지방자치제실시와 관련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의 연구기관등이 직접 발전소 주변의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방사선(능)감시 기능을 부여하여 효율성 제고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감시능력 지원 – 원자력안전센터에 방사선(능) 분석시설 및 요원을 확충 기존 환경감시업무 이외에 인력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감시요원 교육훈련 및 분석평가기법 지원 – 지방자치단체 환경방사능 측정 분석능력의 표준화 업무지원 ○ 과학기술처 방사선 환경담당부서 보강 –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국민이해(Public	

Acceptance)정책을 포함한

환경업무의 확대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등

환경감시 및 영향평가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키 위한 조직보강

방안강구

〈관계법령〉

○ 원자력법 제 29 조 및 제 103 조

○ 원자력법시행령 제 111 조

○ 과학기술처 고시 제 85-5 호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조사 지침)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상이등급분류의 세분화	〈실 태〉 ○ 현재 상이등급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라 8등급으로 분류	경제기획원

등급별 / 구 분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상 이 호 수	5	3	12	12
기능장애도%	15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등급별 / 구 분	3급	4급	5급	6급	계
상 이 호 수	23	10	16	45	126
기능장애도%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9 -10	

○ 1급2항에서 5급까지는 등급간

기능장애도가 10%단위로 균등하나 6급의 경우는 동일 등급내 상이정도의 격차가 커 불만초래

- 한쪽눈이 적출된자 : 기능장애도 40 %

- 한손의 수장부 또는 한쪽발이 상실된 자 : 기능장애도 30 %

- 한쪽다리가 3센치 정도 단축된자 : 기능장애도 10 %

○ 등외판정 경상이자의 보훈시혜 요구 증대

-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 손가락이 상실된 자

- 한팔 또는 한다리의 파편창으로 신경장애가 있는자 등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현행 8등급 분류제를 9등급으로 분류(7급신설) – 6급 : 현행 6급상이자중 중증자 (기능장애도 30-49%) – 7급 : ┌ 현행 6급상이자중 경증자 (기능장애도 30-29%) └ 등외판정 경상이자중 일부 중증자 수용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 제도 개선	〈실 태〉 ○ 보훈병원장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64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가료에 소요된 비용을 면제 또는 60%범위내에서 감면할수 있으나, ○ 현재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 유족 : 50%, 가족 : 40%감면 – 국립보훈원생(양육, 양로원생) :	한국보훈복지공단

	전액면제함으로써 수혜자의 불만초래 〈개선방향〉 ○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율 확대 - 유족·가족 구분없이 60%감면 〈관계법령〉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규칙 제 11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 위임	〈실 태〉 ○ 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 발급등에 관한 업무를 영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행케 할 수 있음. ○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위임 현황 — 부산, 대구, 강원, 충남·북, 전남·북, 제주 : '83.4월 위임 — 경남 : '83.7월 위임 — 광주, 경북 : '88.1월 위임 〈개선방향〉 ○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한 지역 주민의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업무의 지방위임 확대 〈관계법령〉 ○ 여권법시행령 제 26 조	내 무 부 서울특별시
2. 재외국민의 보호 및	〈실 태〉 ○ 현행 재외국민등록법령이 제정후 장기간	

등록률 제고	경과되어 현실과 맞지않고 또한 해외 진출인력의 격증에 따른 재외 국민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 법 률 : 1949 년 제정 – 시행령 : 1969 년 제정 – 단기여행자 까지 일률적으로 공관에 등록케 함은 비현실적임. – 재외국민의 개념에 시민권보유자 까지 포함함은 실효성 결여 ○ 재외국민등록률 저조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조치 필요 – 190 만명에 5 %등록 추정 〈개선방향〉 ○ 재외국민등록법령 정비 – 현실 괴리적 요소의 삭제 · 보완 – 재외국민의 범위 정립 〈관계법령〉 ○ 재외국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소방검사제도 개선	〈실 태〉 ○ 대형특수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검사를 일반 소방행정기관에서 실시 — 원자력발전소, 정유공장등 ○ 원자력발전소등 특수시설 소방 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개선방향〉 ○ 한국기술용역협회, 소방기술사 분회등 민간전문단체에 위탁 검사 실시 — 점검지역 : 서울, 부산 — 점검대상 : 대형, 특수시설 — 위탁기관 : 협회 또는 용역단체 ※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제도화 〈관계법령〉 ○ 소방법 제5조	

2. 소방법위반자에 대한 벌칙 완화	〈실 태〉 ○ 화재예방조례 및 각종 신고의무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 조례위반,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또는 구류처분 등 사소한 행정 규정 위반으로 다수의 전과자 발생 〈개선방향〉 ○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벌칙 완화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위험물제조소 등 양수신고 위반 - 소방설비업 면허변경 신고 위반 〈관계법령〉 ○ 소방법 제 77 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3. 농예용 위험물 허가 대상 완화	〈실 태〉 ○ 농예용을 목적으로 난방시설을 할 경우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후에 시설 ○ 위험물시설 허가대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므로써 주민불편 초래 〈개선방향〉 ○ 화재위험이 적은 농예용 위험물 시설은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관계법령〉 ○ 소방법 제 15 조	
4. 긴급차량 (고속도로 작업차량)에 대한 정원외 승차허용	〈실 태〉 ○ 고속도로상에서 승차정원 초과시에는 사전에 경찰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토록 함으로써 우발적인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약화 ○ 작업차량에 대한 승차제한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교 통 부

	및 제설작업 등에 지장 초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화물작업 차량의 승차정원초과는 불가피한 실정임. 〈개선방향〉 ○ 도로교통법상 특례조항 신설 - 고속도로 작업차량중 긴급업무 수행차량(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일정한도내에서 정원초과 운행 허용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35 조 ○ 동법시행령 제 17 조	
5. 국제 해·공항 보안 검색 제도 개선	〈실 태〉 ○ 김포공항을 제외한 해·공항 출국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업무를 경찰이 담당하므로써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에 차질	내 무 부 교 통 부 해운항만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항공법 제 66 조 제 2 항 : 운송 업자가 검색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 빈번한 인사이동 등으로 검색 업무의 전문성 결여 ○ 검색업무 수행시 경직성으로 대민 관계에 있어 위화감 조성 〈개선방향〉 ○ 출국승객에 대한 검색요원을 운송 업자측에서 확보토록 하고, 검색요원의 업무수행 지도·감독은 경찰에서 관장토록 개선 〈관계법령〉 ○ 항공법 제 66 조	
6. 해외여행 신원조사 절차 간소화	〈실 태〉 ○ 신원조사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 지연으로 국민불편 초래 (시간, 예산, 인력낭비) — 신원진술서 서식 : 3 종 (21 개 항목기재)	내 무 부 국 가 안 전 기 획 부

	– 신원조사 처리전 사용 – 처리기간(신규 : 5일, 재확인 회보 : 2일) – 연고자 종합검토 : 연고자기록대조, 종합검토, 특이자는 안전기획부와 사전 협의 – 재확인 연한제 – 신규신청시 첨부서류 5종 〈개선방향〉 ○ 복잡한 신원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 신원진술서 서식의 통일(3종→1종) 및 기재항목 간소화 – 신원조사 처리전 폐지 – 처리기간 단축(5일→4일) – 연고자 종합검토계획 • 본인기록만 대조 확인후 처리 • 안전기획부와 사전협의제 폐지 – 재확인 연한제 폐지 〈관계법령〉 ○ 해외여행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국유재산 사용요율 조정	〈실 태〉 ○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음 – 행정목적 및 보존문서 수행상 필요한 때 : 100분의 5이상 –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100분의 8이상 – 기타의 경우 : 100분의 10이상 ○ 현재 대부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 책정됨으로써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 〈개선방향〉 ○ 현재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을	건 설 부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에 의거 산림법, 초지법,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요율을 이와 달리 규정한 경우 국유재산법 적용 배제 ○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기타의 경우"사용요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나 현재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중이며 상기법률 제정시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요율도 재검토 필요 ○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추진과 병행하여 영세서민과 관련있는 국유재산법상 사용요율 개정 추진	
2. 지급결재제도 개선	〈실 태〉 ○ 지로는 현재 전국56개 시지역에서만 가능 ○ 가계수표 발행한도는 1매당 30만원 이내 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각종 공과금과 사경제간의 거래도 은행간 지로를 이용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수요가 많은 일부 시지역의 경우 지로 이용 불가능 ○ 경제거래 단위에 비해 가계수표의 매당 발행한도가 낮아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금액에 맞추기 위해 여러장의 수표를 발행하는 등 불편 초래 〈개선방향〉 ○ 지로이용 가능지역을 새로 승격한 시지역까지 확대 실시 — 금융기관간 지로, 온라인망 연결 — 금융결재 관리원이 결재망 구축 ○ 금리 자유화 조치로 가계종합 예금의 예치한도(종전 1천만원)가 폐지됨에 따라 거래단위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 가계수표 1매당	

	발행한도를 100 만원까지 확대 〈관계법령〉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관한지침 개정	
3. 외환관리 자유화확대	〈실 태〉 ○ 국제수지의 흑자 지속에 따라 대외통상마찰 등 제반문제발생에 따른 외환관리상의 각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자유화 범위 확대 필요 〈개선방향〉 ○ 무역외거래 자유화 확대 – 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자유화 범위 확대 – 국민의 해외송금 범위 확대 등 〈관계법령〉 ○ 외국환관리규정 제 11 장	국 세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4. 면세주류의 사후관리절차 간소화	〈실 태〉 ○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면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 면세주류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판매한 주류의 공병 또는 공관 및 왕관을 회수하여 당해 주류 제조업자로 하여금 반환조치 (주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왕관의 전량 회수 불가능 및 보관곤란 – 공병만의 회수로도 면세주류의 사후관리 가능 〈개선방향〉 ○ 공병·공관 및 왕관의 반납의무 완화 〈관계법령〉 ○ 주세법시행규칙 제8조의4항	국 세 청

국 세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상속·증여세 고액장기 미결자료 처리방법 개선	〈실 태〉 ○ 상속세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 ○ "상속세부과당시"라는 시점이 막연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자의적인 결정 우려 – 상속세결정 장기보류로 납세자의 불안 및 조세채권 일실 우려 – 결정지연으로 상속세 과표가 늘어나 납세자에게 불이익 가중 〈개선방향〉 ○ 가결정제도의 도입 –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선 가결정 – 추후 누락재산 발견 즉시 갱정 결정 – 특히, 납세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재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결정 〈관계법령〉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2. 신용카드이용 활성화방안	〈실 태〉 ○ 신용카드거래분을 과세자료로 활용 – 과표노출에 따른 피해의식으로 업소의 가맹기피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기피 ○ 불법대금업등 본래기능을 왜곡하여 신용카드의 변칙사용 사례발생 ○ 행정에 의한 일방적인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가맹업체의 불만 초래 〈개선방향〉 ○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측면에서 카드사용이 보편화 될때까지 잠정적으로 과세자료 활용 유보	재 무 부

	○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신용카드 매출부분에 대한 혜택부여 – 카드매출액의 10/1000을 공제 ○ 불법대금업 등 불법사용자에 대한 규제 강화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3. 세무사찰 제도의 개선	〈실 태〉 ○ 탈세조사기구의 다원화로 포탈범 처벌의 형평일실 – 세무관서 : 포탈세액의 일정액 이상의 경우에만 사직당국에 고발, 형사처벌하고 그 이외에는 통고 처분 – 경찰관서·검찰 : 형사처벌 ○ 세무행정편의 위주의 세무사찰 집행으로 납세자의 민원 및 오해 유발 – 일반조사와 세무사찰의 구분 불분명 – 객관적 세무사찰 적용기준의 미비 ○ 세무사찰의 소극적집행으로 탈세규모	총무처 검찰청 내무부 (치안본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및 수법의 대형·지능화에 따른 규제 미흡 〈개선방향〉 ○ 탈세조사를 세무관서에서 전담토록 일원화 ○ 사찰사무운영규정의 개선 – 세무사찰대상자 선정의 구체화등 합리적 기준 마련 – 세무사찰 집행절차의 적법성보장 장치 마련 ○ 세무사찰 전담기구 설치 및 사찰 전문요원 확보 〈관계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 사찰사무운영규정 ○ 지방세무관서직제 등	
4. 국세환급금 지급절차개선	〈실 태〉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40 조 제 2 항의	재 무 부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절차 – 납세자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제출하면 본인여부 확인후 환급 ※ 구비서류 – 20만원이상 환급시 :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 20만원미만 환급시 : 주민등록증제시 ○ 20만원 이상 환급시에는 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납세자 불편 초래 〈개선방향〉 ○ 국세환급시 인감증명서제출 지급액 범위를 1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편익 도모 – 지급액 100만원 미만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제시로 본인여부 확인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대일수산물 운반선입항로 지정제도개선	〈실 태〉 ○ 대일 수산물운반선에 대한 효율적인 밀수 방지를 위한 입항지 및 입항로 지정제도 시행 ('79. 4.13) — 입항지 : 포항, 부산, 장승포, 목포, 군산, 제주 — 입항로 : 일본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직행항로 지정 — 수산물운반선 : 황색기 게양 ○ 입항지 및 입항로 지정에 따른 항해시간 연장 및 운행경비의 추가부담, 수송지연으로 업계의 불만 야기 〈개선방향〉 ○ 효율적 밀수방지라는 행정편의 위주의 입항로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선적항으로 직접 입항토록 개선 ○ 출장소의 심리기능 및 해상감시	해운항만청

	기능 강화	
	〈관계법령〉 ○ 행정지침	
2. 관세범통고 처분기준 개선	〈실 태〉 ○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관세사범 처벌이 체형위주에서 재정적 처벌로 전환 추세임. ○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확대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 통고처분 기준 금액의 상향조정이 요구됨. — 통고처분 기준	검 찰 청

죄 명	밀수유형	금액기준
관세포탈죄(관세법제 180조)	○승무원	범칙시가 100만원 미만
	○여행자	
	• 내국인	범칙시가 150만원 미만
	• 외국인 (교포포함)	범칙시가 200만원 미만
	○APO.PX이용 밀수	범칙시가 100만원 미만
	○무환수입가장 밀수	범칙시가 10만원 미만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기 타	포탈세액 150 만원 미만	
	무면허 수출입죄 (관세법 제 181 조)	○무면허수출 입업	물품원가 150 만원 미만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관세법통고처분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구속 기준 완화

– 통고처분 기준개정(안)

죄 명	밀 수 유 형	금 액 기 준
관세포탈죄(관세법제 180 조)	○승무원	범칙시가 200 만원 미만
	○여행자	
	• 내국인	범칙시가 300 만원 미만
	• 외국인 (교포포함)	범칙시가 500 만원 미만
	○ APO . PX이용 밀수	범칙시가 200 만원 미만
	○무환수입가장 밀수	범칙시가 300 만원 미만

	○기 타	포탈세액 300만원 미만
무면허 수출입죄 (관세법 제 181조)	○무면허수출 입업	물품원가 500만원 미만

〈관계법령〉

○ 관세청훈령 제 404호

3. 무환수입물품 통관절차 개선

〈실 태〉

○ 수입자유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없는 무환수입 물품에 대한 규제지속

○ 규제로 인한 통관지연사례등 민원야기

〈개선방향〉

○ 수출입 승인면제물품 통관절차 개선

- 견본 및 하자보수용 물품통관절차 간소화
- 견본품 추천기관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추가
- 과세가격 100만원이상 일반수중물품에 대한 본청의 사전승인 절차 폐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관계법령〉 ○ 견본품통관사무처리요령 ○ 무환수입물품통관사무처리요령(예규)	
4. B/L 분할통관 대상기준 개선	〈실 태〉 ○ B/L 분할 통관대상기준의 불명확 – 단일 대량화물로서 업체의 성실도 감안 – 세관장이 선별적으로 판단결정 〈개선방향〉 ○ B/L 분할통관 대상기준의 구체화 • B/L 분할통관 대상물품 지정 – 원목, 고지, 펄프, BWT 물품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계법령〉 ○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5. 여행자입국 신고서식 개선	〈실 태〉 ○ 입국여행자가 법무부 사열과 세관 휴대품 검사시 별도의 신고서를 이중으로 작성제출 – 법무부 출입국 신고서 – 세관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법무부 및 세관에 이중으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케함으로써 여행자 불편 초래 〈개선방향〉 ○ 법무부 및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을 통합하여 일원화 〈관계법령〉 ○ 관세청 고시(제 85-550 호)	법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부동산등기법상의 보증서 제도개선	〈실 태〉 ○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할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등기의무자가 진정한 본인임을 입증하는 보증제도 시행 ○ 관할등기소 소유권등기자의 보증기피 및 허위보증으로 보증제도의 실효성 저하 〈개선방향〉 ○ 현행 보증서제도를 폐지하고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 ○ 또한 현행제도를 존치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등 연구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 49 조, 제 67 조, 제 69 조, 제 86 조의 2	대 법 원

2. 검찰직수사건의 직접처리제도확대

〈실 태〉

○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직접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직접처리율
'87	17;784	6,222	35.0%
'88	13,709	5,079	37.1%

※ '88년도의 경우는 3/4분기까지의 실적임

○ 검찰의 수사인력부족으로 인한 검찰직수사건의 처리율 저하로 국민권리구제 미흡

〈개선방향〉

○ 검찰직수사건의 직접처리 확대방안 마련

— 현행 검찰직수사건의 직접처리율 제고

〈관계법령〉

○ 행정지침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3. 사회보호법 개정	〈실 태〉 ○ 사회보호법 제2조에 범죄단체 수괴등을 보호처분대상자로 규정 ○ 동법 제5조1항(필요적감호)및 동법 제8조제1항(필요적치료감호) 등에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 보호감호기간을 7~10년으로 규정 ○ 감호요건 인정에 법원의 재량권이 박탈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음 〈개선방향〉 ○ 범죄단체 수괴등에 대한 감호규정 폐지 ○ 필요적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 요건으로 추가 ○ 보호감호기간의 상한선을 7년으로 통일 〈관계법령〉 ○ 사회보호법 제2조, 제5조, 제8조	

4. 보호관찰법 시행령 등 제정추진	〈실 태〉 ○ 보호관찰법안의 국회통과로('88.12. 15)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호관찰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보호관찰 전담기구 미비 〈개선방향〉 ○ 보호관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보호관찰전담기구 설치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규정제정 — 보호관찰소 설치 — 보호관찰관등 인력확보 〈관계법령〉 ○ 보호관찰법 ○ 공무원임용령	경제기획원 총 무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5. 소년원법 시행령 제정	〈실 태〉 ○ 소년원법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1988.12.15)로 전문 20 개조의 현행 소년원법이 6장 53개 조문으로 정비 ○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제정 및 교사등 소요인력의 증원필요 〈개선방향〉 ○ 소년원법시행령 제정 — 현행 "소년원처우규정"및 "소년감별소처우규정"의 통·폐합 — 소년원 교육과정이수자에 대한 교육법상의 학력인정 절차 규정 — 교사등 인력확보 〈관계법령〉 ○ 소년법 ○ 소년원법 ○ 교육법	경제기획원 총 무 처 문 교 부 법원행정처

6. 행형법개정 추진	〈실 태〉 ○ 현행 행형법(1950.3.2 제정)은 4차에 걸친 부분적 개정이 있었으나, 최근 사회의 민주화·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민주적 행형제도로 개정 필요성 증대 — 행형법 조문이 난해하고 일본식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 재소자의 인권신장, 개방처우등 선진교정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개선방향〉 ○ 민주화 추세에 맞는 행형법령의 개정추진 — 재소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권익을 최대한 보장 — 법률용어의 정비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관계법령〉 ○ 행형법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7. 소년재소자 수용관리지침 제정	〈실 태〉 ○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20세 이하 소년재소자는 6,300여명으로 전체수용인원의 13%에 해당됨 — 소년재소자의 전용시설(2): 인천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 소년재소자에 대한 교정시설내의 수용, 계호 및 처우가 성년재소자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어 소년재소자의 특성에 맞는 수용관리 곤란 〈개선방향〉 ○ 소년재소자 수용관리지침 제정 — 과학적인 분류심사로 수용 및 계호의 적정성 도모 — 교화·선도를 위한 교육 및 정서활동 체계화	

	— 자율적인 규율준수 분위기 조성 〈관계법령〉 ○ 행형법 ○ 소년법	
8. 거주(이민) 여권소지자의 출국제도 개선	〈실 태〉 ○ 거주(이민)여권소지자의 경우 — 이민목적지 국가의 사증을 소지한 때 — 국내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과 함께 일시 출국하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는 출국제한 ○ 거주(이민)여권소지자가 이민목적 이외에 친지방문 또는 관광차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국이 허용되지 않아 동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본인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 초래.	외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거주(이민)여권소지자가 이민이외의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도 행선국의 합당한 사증만 있으면 출국허용토록 개선 〈관계법령〉 ○ 여권법 및 동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국 방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군인자녀 학비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실 태〉 ○ 군인자녀교육보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인자녀에게 국고에서 학자금을 보조하고 있음 ○ 군인자녀 학비보조금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비능률 초래 〈개선방향〉 ○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에 의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과 같이 군부대에서 직접 군인에게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법령〉 ○ 군인자녀교육보호법 및 동시행령 ○ 공무원수당규정	총 무 처 문 교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2. 군용 전기 통신관리 제도개선	〈실 태〉 ○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통신전자기능의 다양화로 1961년도에 제정된 현행 군용전기통신법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 〈개선방향〉 ○ 현행 군용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행정현실에 맞게 보완정비 — 특별보호구역내에서 각종 설비 설치행위 완화등 〈관계법령〉 ○ 군용전기통신법 및 동시행령	체 신 부
3. 군용장비 면허제도 개선	〈실 태〉 ○ 민간장비의 조작면허 및 자격은 법률에 의거 법적·사회적으로 공인	교 통 부 건 설 부

○ 군용장비 면허에 관한 사항은 특례규정이 없고 군교육이수후 각군 규정에 의한 군면허 교부 또는 면허없이 실무배치운용,

-- 면허 및 자격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법적, 사회적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군양성기술 요원의 장비조작은 비공인 면허자의 장비조작 행위 이므로 장비조작시 대민사고 발생시 법적문제로 대두

○ 민간 기술교육과정보다 체계적이고 장기간의 군교육이수 및 실무에 종사하고도 공인된 면허 및 자격과 근무경력을 취득할 수 없음

○ 군특수장비 조작요원에 대한 면허 자격부여 불가

예) 전차, 장갑차, 수륙양용차, 자주포 등 조작요원

○ 군양성 기술요원의 면허·자격과 경력등이 사회적으로 연계가 되지

국 방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않아 군사기 및 근무의욕 저하 〈개선방향〉 ○ 법적 및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증 취득 — 군기술교육 및 장비의 조작면허 등 ○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중기관리법 ○ 선박직원법 ○ 항공법	
4. 부동산매수 보상금지급 제도개선	〈실 태〉 ○ 군사상 필요한 토지, 건물등 개인 소유 부동산 매수시 매수보상금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개인명의에서 국가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 ○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부동산매매 행위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매대금과 상호교환으로 종결처리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 군용지를 매수할 때에는 국가명의로 이전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매수보상금을 피보상자에게 지급하므로 보상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체시키고 있음 — 피보상자의 재산손실 발생 — 피보상자의 대체토지 구입 등 생활대책 수립에 지장초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회계년도내 명의이전등기 곤란시 매매대금 공탁으로 인한 국고 손실 및 행정력 낭비초래 〈개선방향〉 ○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과 국가소유명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시 매수보상금 지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미비 및 지장물의 이전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가 구비되거나 지장물이 이전될 때까지 해당 보상액의 30%를 지급유예 조치 〈관계법령〉 ○ "군용지매수및손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정	

병 무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동시재영자의 복무기간 단축제도 개선	〈실 태〉 ○ 생계사유로 인한 동시재영자의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선정방법은 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경우 잔여복무기간이 짧은 자를 보충역에 편입 ○ 생계유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복무기간이 짧은 자를 일률적으로 보충역에 편입하므로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 〈개선방향〉 ○ 동시재영자의 보충역편입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인 자를 보충역에 편입	국 방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그 이외의 경우는 출원인 가족이 원하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98조	
2. 신체등위 7급인 자의 재신체검사 제도개선	〈실 태〉 ○ 징병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의 판정이 어려운 자는 치료기간을 명시하여 7급판정 — 치유기간 경과후 1월이내 재신체검사 — 치유기간이 최초검사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자는 보충역 처분 ○ 1년이내의 수차반복 재신체검사에 따른 민원야기 및 의무자의 불편 초래	국 방 부

		〈개선방향〉 ○ 재신체검사를 계속3회 실시하여도 신체등위가 7급인자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 개정 〈관계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17조	
3.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기준개선	〈실 태〉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시, 가족의 재산 및 수입의 범위를 병무청장이 자체기준을 책정 운영 — 재산세 : 지역에 따라 6,000원 — 15,000원 — 생계비 : 〃 1인기준 21,000원 — 27,000원 — 농경지 : 〃 1인기준 논 200평 — 250평 밭 200평 — 400평 ○ 생계곤란자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대다수 병역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국 방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88 년도 보건사회부 기준 — 재산액 : 320 만원 — 수입액 : 44,000 원 〈개선방향〉 ○ 생계곤란자의 평가기준 완화 — 병역감면처분시 평가기준을 생활 보호법에 의한 자활대상자 책정 기준으로 적용하여 불우계층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 〈관계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 98 조 ○ 병무청훈령 제 86 호	

문 교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 기록방법 개선	〈실 태〉 ○ 현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및 서식은 문교부훈령 제 323 호에 의거 사용 ○ 제 5 차 국·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력평가 등 기록방법 변경 필요 〈개선방향〉 ○ 제 5 차교육과정 개정에 맞는 평가 기록방법으로 개선 – 국·중·고 생활기록부 상호간의 연계 및 통일성 부여 – 기타 사용상의 문제점 개선 등 〈관계법령〉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취급요령 ○ 문교부훈령 제 323 호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2. 학교법인 기본재산 임대시 사전 허가제 폐지	〈실 태〉 ○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할 경우 감독청 허가 〈개선방향〉 ○ 학교법인 기본재산 임대시 사전 허가제 폐지 – 수익사업의 신장을 위한 학교법인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 28 조	

농림수산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누에고치 등급명칭 변경	〈실 태〉 ○ 현행 누에고치의 등급명칭은 2수등, 수등, 1등, 2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 "2수등", "수등"은 일반적 통념인 "숫자" 명칭에 부합되지 않아 호칭과 이해등에 번거롭고, 다른 농산물검사등급 명칭과도 체계상 일관성이 없음. 〈개선방향〉 ○ 등급명칭을 타농산물 등급규격체계와 부합되게 개정 - 등급구분 : "1등", "2등", "3등", "4등" 〈관계법령〉 ○ 농산물검사규격규칙(농림수산부령 제933호) ○ 농림수산부고시 제87-20호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2. 축산물 공판장 개설지역 규제완화	〈실 태〉 ○ 축산물 공판장은 시지역에서만 개설 운용 가능 ○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환경, 공해문제 및 관련법규의 과다한 규제로 시지역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 〈개선방향〉 ○ 축산물 유통 편익을 위하여 시지역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지역에도 개설 〈관계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22 조의 2	
3. 농약판매업 이전절차 간소화	〈실 태〉 ○ 농약판매업소의 농약관리인 변경시 시설변경 및 등록증 재교부등에	

	관한 규정 미비 ○ 양도 및 이전의 경우, 폐업신고후 신규로 등록을 해야되며 등록증 오손 및 훼손시 재교부규정 부재로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향〉 ○ 농약판매업의 양도, 관리인변경, 시설변경, 등록증 재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이전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해소 〈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제 10 조	
4. 다년생작물 재배 허가	〈실 태〉 ○ 경사도 15°이하의 밭이나 논에는 다년생 식물이나 관상수를 승인 또는 허가없이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제 – 지역여건에 맞는 대단지 과수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와 복합 영농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및 지역적 특수과수의 재배 불가로 농가소득 향상 저해 – 경사 15°에 대한 측정이 어렵고 주민의 이해부족 및 식재급증으로 농지관리 및 허가 곤란 〈개선방향〉 ○ 한계농지(예 : 곡간농지)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조치 ○ 현행 시·도지사의 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관계법령〉 ○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2 조 ○ 동법시행령 제 16 조	
5.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 경감 및 농지 편입 허용 비율조정	〈실 태〉 ○ 도시계획구역(자연녹지지역)내에서 토지형질 변경(농지전용)을 할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민부담 과중 ○ 농지의 편입비율이 낮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 초래 〈개선방향〉 ○ 농지편입비율의 확대 조정문제는 시설의 성격,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재정비 필요 ○ 일정한 규모의 농지전용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농가주택 신축등 〈관계법령〉 ○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 조	
6. 농지일시 전용 규정의 법제화	〈실 태〉 ○ 영구농지전용 :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 ○ 일시전용 : 농림수산부령으로 군수에게 위임 처리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허가대상별 명확한 허가기준의 미비 ○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전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시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피해 발생 ○ 토석채굴을 위한 일시전용 허가시 용도별 허가기준이 없어 법운용상 차질 초래 〈개선방향〉 ○ 현행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의 일시전용 대상을 법률에 명문화 〈관계법령〉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7.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권한 위임	〈실 태〉 ○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경지(전·답·과수원 등)이면 도지사와 사전협의·승인후	

	토지형질 변경 허가 ○ 도지사의 조정·통제에 따른 협의 기간의 과다소요로 시·군 지역개발에 지장 초래 〈개선방향〉 ○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중 일정 면적이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 상대농지 : 1ha 이하 – 절대농지 : 5,000 ㎡이하 〈관계법령〉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 조 ○ 동법시행령 제 4 조, 제 11 조, 제 20 조	

<table>
<tr><th>과 제 명</th><th>실 태 및 개 선 방 향</th><th>관련부처</th></tr>
<tr><td>1. 생물학적 제제 동물 약품 검정 제도 개선</td><td>〈실 태〉
○ 동물약품 생물학적제제와 항생물질 제제의 검사는 제품생산전 제조 회사의 자체검정과 국가검정기관의 검정등 이중검정을 받고 있음.
※ 생물학적 제제 검정현황
<table>
<tr><th>구 분</th><th>'65</th><th>'75</th><th>'88</th></tr>
<tr><td>연 구 원</td><td>4</td><td>3</td><td>3</td></tr>
<tr><td>품 목 수</td><td>6</td><td>15</td><td>65</td></tr>
<tr><td>검정건수</td><td>36</td><td>248</td><td>830</td></tr>
</table>
○ 다수제품의 검정에 따른 전문성 결여 및 이중검정으로 인한 검정 인력, 비용 낭비
〈개선방향〉
○ 자체검정으로 대체가능한 품목을 선정, 동 품목에 대한 국가검정을 면제하여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관계법령〉
○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규칙</td><td>농림수산부</td></tr>
</table>

산 림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무단점유 국유림매각 기준 개선	〈실 태〉 ○ 집단건물 점유지는 면적제한 없이 매각이 가능하나, 분산점유지는 일정 면적 초과시 매각 불가 – 시지역 : 300평 – 시이외지역 : 600평 ○ 농경용 무단점유지중 상대농지의 매각 불가로 민원 야기 〈개선방향〉 ○ 산림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면적의 제한이나 상대농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이 가능토록 개선 〈관계법령〉 ○ 국유재산관리계획	재 무 부
2. 국유림매각 방법 개선	〈실 태〉 ○ 산림법 제80조에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유림	재 무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내의 타지목(전답, 과수원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이 없음. ○ 수의계약 매각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단점유상태 지속 및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으로 분쟁 유발 및 민원 야기 〈개선방향〉 ○ 국유림내 임야이외의 지목은 대부 1년 경과후 수대부자의 희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관계법령〉 ○ 국유재산관리계획	
3. 임산물 굴·채취허가 완화	〈실 태〉 ○ 산림안에서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농림수산부

○ 다만, 산림법시행규칙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능

- 임산물 굴취·채취 신고대상
  - 임업시험 또는 임업연구를 위하여 굴취·채취하는 경우
  - 임산물의 생산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 임산물생산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역에서 지정된 품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의 굴취·채취 대상
  -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칡뿌리 제외)의 굴·채취
  -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시비,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허가사항으로 되어있는 임산물의 굴취·채취행위 제한 완화 〈관계법령〉 ○ 산림법시행규칙 제 94 조	
4. 임산물의 종류 명정 및 추가 지정	〈실 태〉 ○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 목탄,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 주근, 생지, 수실, 수피, 수지, 낙엽, 토석 및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물로서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임산물의 종류 – 대나무, 장작, 떼, 생엽 – 선태류, 초본류, 만경류 – 버섯 – 단목, 심목, 삭편, 죽더기, 톱밥 – 합판	농림수산부

	〈개선방향〉 ○ 임산물사용 제한고시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유통관리상 다음 산물을 임산물로 명정 – 버섯, 단목, 심목, 삭편, 죽더기, 톱밥 ○ 새로운 용도개발에 따른 임산물 추가 지정 – 삭편판, 톱밥숯, 단판, 섬유판, 집성재 〈관계법령〉 ○ 산림법시행규칙 제 2 조	
5. 입목벌채 신고대상 범위확대	〈실 태〉 ○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 벌채 신고대상으로는 – 치수무육을 위한 벌채 – 농촌연료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입목벌채 –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의 벌채 – 대나무,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	농림수산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포플러, 양버들 및 미류나무의 벌채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철도선로로부터 10 m 이내의 지장목과 전선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등 ○ 영림계획이 편성되지 아니한 임지에서 산주가 자가사용 용재의 벌채, 임도, 방화선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향〉 ○ 영림계획이 편성되지 아니한 임지에서 벌채 제한행위 완화 (신고사항) –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 복구, 건축 및 농기구등의 수선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2㎡ 이내의 벌채 - 임도 및 방화선 설치를 위해 필요한 벌채 - 지적공부상 1단지 5,000㎡이내의 전답의 입목 벌채 〈관계법령〉 ○ 산림법시행규칙 제87조	
6. 입목벌채 연기신고 처리절차 간소화	〈실 태〉 ○ 현행 입목벌채기간 연기신고 처리절차 - 연기신고→접수→현지확인→기안결재→신고필증작성 및 교부 ○ 벌채사업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확인 및 신고필증교부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농림수산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입목벌채기간 연기신고시 현지확인 및 신고필증교부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벌채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법령〉 ○ 산림법시행규칙 제 18 조 및 제 85 조	
7. 국유림매각 가격결정 방법개선	〈실 태〉 ○ 국유림 매각가격 결정시 – 임야가격 평가조서 – 임야가격 사정표 – 국유임야 자체평가조서 – 인근 유사지 매매실례 조서 – 입•목•죽, 가격사정표 – 조림비 산출표등에 의해 가격 결정 ○ 국유림 매각가격 결정시 작성서류가 복잡하고 국유재산법상의 가격결정 방법과 상이	농림수산부

	〈개선방향〉 ○ 국유림 매각가격 결정방법 간소화 – 임야가격사정표, 부동산감정표, 재산평가조서에 의해 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법령〉 ○ 산림법시행규칙 제 67 조 제 3 항	

수 산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어업허가제도 개선	〈실 태〉 ○ 정한수가 있는 어업으로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 기관(종전의 허가관할관청)의 제한으로 주소지와 허가관청이 다른 어민은 불편초래 ○ 원양어업허가(독항식참치연승어업)의 경우 조업구역구분(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따른 어장제약 및 민원인 불만야기 ○ 잠수기어업의 조업방법제한(두구식)에 따른 인명피해 및 사고다발로 새로운 심해어장 개발제약 〈개선방향〉 ○ 시·도별 정한수 미설정어업의 허가신청기관의 다원화 —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 관할관청 추가	농림수산부

	○ 독항식 참치 연승어업의 조업구역 폐지 ○ 잠수기어업의 조업방법을 완화하여 두구식과 마스크식으로 선택가능토록 개선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23 조 ○ 수산업법보호령 제 23 조, 제 124 조 ○ 어업허가에관한규칙 제 8 조, 제 17 조	
2. 양식장형망선 정한수의 합리적 조정	〈실 태〉 ○ 양식장 관리 및 양식물(피조개등) 채포를 위해 양식장형망선을 사용 • 양식장형망선의 정한수 — 양식장 70ha 당 1척 (경남 122척, 전남 76척) — 어선규모 : 10 t 이하 ○ 피조개 대일수출시기인 3～4월에는 각 어장에서 동시 채취작업으로 인한 양식장형망선의 부족 및 불법 형망선 발생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양식장형망선 정한수의 합리적 조정 〈관계법령〉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0조	
3. 원양어획물의 반입신고확인 절차 개선	〈실 태〉 ○ 원양어획물은 위판을 거치지 않고 국내반입 판매 ○ 대형접안 전용부두 시설등 여건 미비로 위판제도 시행곤란으로 인한 일시대량 반입시 연근해어종과 유통 마찰 우려 〈개선방향〉 ○ 원양어획물 국내반입 확인제도 도입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 50 조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에 관한 고시제정	농림수산부

상 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수출보험 제도개선	〈실 태〉 ○ 수출보험제도중 수출어음보험 상사별 적용대상 및 이용자 자격요건등이 엄격 — 적용대상 : 연불기간 6개월이내 무신용장거래등 — 자격요건 : 업력 5년이상 최근 1년간 3천만$이상 — 부 보 율 : 50% ○ 현행 제도상 동보험적용대상, 이용자의 자격요건등의 제약으로 중소수출업체의 가입곤란 ○ 낮은 부보율에 따른 수출자에 대한 수혜 미흡 〈개선방향〉 ○ 연불기간 및 대상거래범위 확대 ○ 이용자의 자격요건 대폭완화 ○ 부보율의 상향조정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관계법령〉 ○ 수출어음보험상사별 임의포괄보험 실시요령	
2.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	〈실 태〉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연간 400 여건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상 분쟁해결에 필요한 분쟁사실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이 동 중재원에 위임되어 있지않아 분쟁 해결의 지연 초래 〈개선방향〉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 46 조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 — 자료제출요구권 — 사실조사권등 〈관계법령〉 ○ 대외무역법 제 46 조	

3. 무역업허가 제도개선	〈실 태〉 ○ 의약품의 수출·입업 허가등은 대외 무역법과 개별법에 의하여 수출·입업허가를 2중으로 받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한 별도 수출·입업의 허가제도는 행정절차의 복잡만 초래 〈개선방향〉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등 수출·입업 허가제도 폐지 ○ 석유류 수출·입업 신고제 폐지 〈관계법령〉 ○ 약사법 ○ 석유사업법시행령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
4. 특수지역 출입국절차 개선	〈실 태〉 ○ 특수지역 인사초청시 출입국 절차가 복잡하여 장시간이 소요(2주~4주) 되므로 상담 지연 및 기회일실 — 상공부주관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법무부에 협조요청	외 무 부 국가안전 기 획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특수지역 입국시 KOTRA 및 안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의견 종합후 외무부에 협조요청 〈개선방향〉 ○ 입국절차는 외무부(재외공관장) 재량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 출국절차는 국제민간경제협의회로 출국창구 일원화 〈관계법령〉 ○ 특수지역출입국절차요령	
5. 중고자본재 도입제도 개선	〈실 태〉 ○ 동일물품에 대한 중고자본재도입 검토기준과 수출·입별도 공고상의 중고기계수입승인 기준이 상이하고 자금원(내자 또는 외자)에 따라 수입가능범위가 상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초래	

	〈개선방향〉 ○ 중고자본재도입 검토기준을 수출·입별도공고상의 중고기계수입승인기준과 부합되도록 개선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목적물로서의 중고자본재 도입검토기준"개정	
6. 생산성시설 투자승인 제도개선	〈실 태〉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공부에서는 동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수행 ○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의 업무폭주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향〉 ○ 현행 동업무의 처리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협중앙회이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를 추가하여 업무집중 해소	총 무 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7.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제도 개선	〈실 태〉 ○ 각 조합의 정관변경인가, 사업계획 변경, 상근임원 임용시 정부나 중앙회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부나 중앙회의 과다 관여로 각 조합의 자율성 신장 저해 〈개선방향〉 ○ 주무부장관 인가를 요하는 정관변경 사항중 목적, 명칭, 조합원 가입자격, 사업등 주요사항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탁 ○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회 승인제를 보고제로 변경 ○ 상근임원임용시 중앙회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	
8.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운용 체제개선	〈실 태〉 ○ 사업비 산정방법·운용요령 위반시 구체적 제재방법 부재 ○ 운용요령중 실제사업수행상 필요한 근거 규정 미비 ○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심사 선정까지 절차복잡 ○ 개발사업비 산정방법 불명확 ○ 국립공업시험원과 상공부가 중복 심의하여 심의제도의 이원적 운영으로 행정낭비 초래 〈개선방향〉 ○ 미비한 규정은 보완하고 현실과 맞지않는 규정은 개정 ○ 심사선정 및 개발사업 선정절차 간소화 〈관계법령〉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9. 중소기업공제 기금대출조건 완화	〈실 태〉 ○ 현행 기금대출은 거래상대방의 도산발생일로 부터 6개월 - 1년, 부금가입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대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개선방향〉 ○ 기금대출조건을 부금가입후 6개월 미만으로 개정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0.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 소 화	〈실 태〉 ○ 경쟁국에 비해 공장설치절차 복잡 ○ 부처별 창업절차 간소화에 대한 협조체제 미흡 ○ 관계부처 협의 과정의 지연, 협의불가능으로 절차 지연	경제기획원 내 무 부 건 설 부 농림수산부 산 림 청 동력자원부 환 경 청 체 신 부

〈개선방향〉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범위의 확대

17개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 절차

⇩

21개법률에 의한 43개 인·허가 절차

○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원활화

- 창업사업계획처리 통합지침 제정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공업표준 제·개정신청 서류 간소화	〈실 태〉 ○ 공업표준의 제·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공업표준화법 제 8 조) · 신청시 구비서류 — 제·개정을 위한 설명서 — 공인기관의 검토의견서 ○ 이해관계인에 의한 규격 제·개정 신청시 공인기관의 검토의견서 첨부를 요구하므로써 제·개정 신청 억제 및 의견제시기회 박탈 〈개선방향〉 ○ 공업표준안의 제·개정 신청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공인기관의 검토의견서 제출 생략 〈관계법령〉 ○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 1 조, 제 2 조	상 공 부

동력자원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아스팔트 품질관리 제도개선	〈실 태〉 ○ 아스팔트는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 대상 제외 품목으로 되어있어,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유통으로 도로수명 단축 — 1985 ~ 1988.4 까지 425 건 시험 결과 14 %가 K·S 규격에 미달 〈개선방향〉 ○ 석유품질검사 대상품목에 아스팔트 추가 ○ 아스팔트 품질기준 제정 〈관계법령〉 ○ 석유사업시행규칙 제 11 조	
2. 도시가스 매물배관 검사대상 범위조정	〈실 태〉 ○ 도시가스 매물배관의 설치 및 변경 공사시 검사대상 범위가 100 m이상~ 300 m미만으로 되어있음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도시가스 매물배관 검사범위가 좁아 잦은 검사로 인한 공사시기 지연으로 교통소통 및 도시가스 수요개발에 지장초래 〈개선방향〉 ○ 도시가스 매물배관 검사범위를 300 m 이상~500 m 미만으로 조정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기여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2	
3. 과태료부과 징수 제도 개선	〈실 태〉 ○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시·도지사에 위임된 열사용기자재의 신고관리업무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권자(동력자원부 장관)가 분리되어 있어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개선방향〉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도모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 25 조	
4. 전기보안 담당자선임 제도개선	〈실 태〉 ○ 전기공작물설치자는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중에서 보안담당자를 선임·운영 ○ 보안담당자선임에 갈음하여 겸임보안담당자 또는 겸임 보안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 겸임보안담당자 : 전기기사로서 수용설비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2-10개소 시설의 보안담당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겸임보안대행자 : 전기안전공사(전기사업법에 의한 지정조사기관)로서 수용설비 전기사용량에 따라 2-60개소 시설의 보안담당 ○ 현행 규정상 겸임보안담당자와 겸임보안 대행자가 보안담당할 수 있는 시설수의 조정요구 급증 〈개선방향〉 ○ 전기기사의 보안겸임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전기기사가 일정한 자격·인원·장비등 법정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 시·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로 등록 가능토록 개선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 40 조, 제 29 조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47 조 제 3 항, 제 58 조 제 2 항	

5. 자가용전기 공작물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실 태〉

○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인가 및 공사계획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인 가	신 고
발전소설치	• 출력 1 만kw 이상	• 출력 1 만kw 미만
수용설비 설치	• 수전전압 17 만V이상	• 수전전압 5 만V이상 17 만V미만 • 수전전압 5 만V 미만으로서 수전전력 300 kw이상
비상발전기 설치		• 출력 100kw 이상

○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권한의 중앙집중으로 행정의 현지성 확보곤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인가 신고업무는 시·도에 위임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 47 조, 제 48 조	
6. 전기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 육성	〈실 태〉 ○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점검 및 조사연구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법정 전문기관 부재로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기준의 발전·보완미흡 — 검사·연구시설·장비확보 곤란 — 수용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제공의 한계 〈개선방향〉 ○ 법률상 전문기관으로 전기안전검사 기관 설립 ○ 전기사업법에 설립근거규정 마련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정	
7. 석탄 및 연탄 품질관리제도 개선	〈실 태〉 ○ 석탄 및 연탄의 품질유지를 위한 검사를 품질관리 우수업체와 기타 업체와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품질기준 위반업체는 고발 및 허가취소 ○ 품질관리우수업체와 기타업체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품질관리유도대책 미흡 〈개선방향〉 ○ 품질관리 우수업체는 검사를 경감토록 개선 — 석탄은 동일계열사간 거래시 검사 면제 ○ 품질위반시 석탄은 과징금제도, 연탄은 벌점제도 신설 〈관계법령〉 ○ 석탄사업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건 설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공동주택 하자보수 제도개선	〈실 태〉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 하자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규정이 없음 ○ 공동주택 사업자는 하자보수기간 (3년)만료시 준공검사권자로부터 하자여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 준공검사권자가 발견한 하자에 대한 책임기간경과로 입주민과의 분쟁발생 〈개선방향〉 ○ 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의무화 ○ 하자보수 책임제도를 강화하여 하자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기간 경과후에도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책임이 유효하도록 개선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2. 주택건설 등록업체의 시공범위 확대	〈실 태〉 ○ 6층이상의 아파트건설은 건설면허 업체만 시공이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체는 고도의 시공능력이 있으면서도 6층이상의 아파트건설 참여 제한 〈개선방향〉 ○ 주택건설등록업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아파트 시공권을 부여 할 수 있도록 개선 – 7층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 500세대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3. 공유수면 매립공사 감리제 도입	〈실 태〉 ○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감리 제도가 없어 준공후 매립면허자가 취득할 수 있는 매립지 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비산정 및 확인곤란 〈개선방향〉 ○ 공유수면 매립공사 감리제 도입 〈관계법령〉 ○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규정 (훈령)	
4. 개발제한 구역내건축 행위제한 완화	〈실 태〉 ○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행위 범위가 서로다름 – 도시계획법 : 30 ㎡이내 건축행위 – 건축법 : 50 ㎡이내 건축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소규모 건축행위도 건축사의 설계서를 제출케 하므로 주민의 경제적부담 가중	

	〈개선방향〉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범위조정 – 50㎡이내의 주택과 부속건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 50㎡이내의 농림수산업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신고사항으로 가능한 건축행위의 경우 자가 설계만으로 건축가능토록 개선 〈관계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식품제조업 영업허가권의 하부위임	〈실 태〉 ○ 식품제조업중 인스턴트면류제조업, 다류제조업 영업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되어있어, 지방화, 자율화 시책에 부적합 〈개선방향〉 ○ 인스턴트면류제조업 및 다류제조업의 영업허가권을 현행 보건사회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위임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 22 조, 제 72 조 ○ 동법시행령 제 10 조 ○ 동법시행규칙 제 22 조	
2. 신규식품 접객업 영업자의 사전 위생교육 제도개선	〈실 태〉 ○ 식품접객·조리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위생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간 : 20시간(합숙) - 교육주관 : 보건사회부장관 (동업자단체에 위탁) ○ 영세영업자의 경우 합숙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교육기간(3일)의 장기로 생업유지에 지장 초래 〈개선방향〉 ○ 보건사회부장관이 주관하는 신규 영업자의 사전위생교육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 ○ 교육시간을 현행 20시간내에서 8시간이내로 단축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7조 ○ 동법시행규칙 제37조
3. 의료인등의 면허재교부 세부기준 제정		〈실 태〉 ○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 제52조 및 의료기사법 제12조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의료인·의료기사등이 면허가 취소된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의료법시행규칙 제6조) ○ 면허재교부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없어 의료인 등의 민원야기 — 면허재교부 시기등 〈개선방향〉 ○ 의료인·의료기사의 면허재교부에 대한 세부기준 제정 —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령 개정 〈관계법령〉 ○ 의료법 제5조 ○ 의료기사법 제12조 2항 ○ 의료관계 처분기준령(훈령 제477호)	

4. 공중보건 의사의 지역 내 근무지역 지정 및 변경 등의 권한 위임	〈실 태〉 ○ 병역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공중보건의사의 지도·감독권한이 보건사회부장관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실정에 맞는 근무지역 및 기관지정이 어려우며, 행정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지역주민여론의 반영 곤란 〈개선방향〉 ○ 공중보건의사의 지역내 근무지역 지정 및 변경등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관계법령〉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5. 가정의례 규제제도 개선	〈실 태〉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허례허식 금지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 —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 명의의 신문 게제 — 화환, 화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 답례품의 증여 — 굴건제복의 착용 — 만장의 사용 —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접대 ○ 의례생활에 대한 규제는 사회실정에 배치되고 실효성이 없음 〈개선방향〉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규제사항을 자율시행토록 유도 〈관계법령〉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환 경 청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자동차 소음 최초 검사 제도개선	〈실 태〉 ○ 현행 자동차 소음최초검사는 자동차 제작시에 매차종마다 받게되어 있음 ○ 기본차종에서 변경된 동일차종이라도 소음 최초검사 생략신청에 의해 생략승인여부를 검토·통보하고 있음 – 소음최초검사 생략신청 건수의 급증으로 불필요한 서류 작성 및 검토로 민원인(자동차회사) 불편초래 및 행정능률 저하 – 소음최초검사생략 신청건수 ('87년 : 120건, '88년 : 160건) 〈개선방향〉 ○ 현행 자동차 소음최초검사 생략승인 신청을 소음최초검사 생략신고로 개선 – 생략신고검토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든행위를 종결 ○ 자율생략신고를 인정하되, 후속조치로 수시 검사 강화	교통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관계법령〉 ○ 환경보전법 제 32 조의 4 ○ 자동차소음검사규정 (환경청 고시 제 86 - 11 호)	
2.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설정	〈실 태〉 ○ 항공기종의 고속화 및 항공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 대책 시급 ○ 항공기 소음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소음대책의 목표치가 불분명한 상태임 〈개선방향〉 ○ 김포공항주변에 항공기소음 자동 측정소 설치 ○ 측정분석결과를 토대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설정 〈관계법령〉 ○ 환경보전법 제 4 조	교통부

노 동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국외취업 근로자송출 허가제도 개선	〈실 태〉 ○ 국외취업자를 모집 및 송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 15 조에 의거 모집신고 및 송출허가를 받아야 함. ○ 단체취업 및 개별취업의 경우 국외취업절차의 복잡으로 적기 송출요구에 부응치 못하여 국외인력 진출제고에 지장초래 ※ 국외취업절차 (단체취업) • 해외구인요청→국외유료직업안내 및 공급업체→국외취업자모집신고 →지방노동관서 (신고필증교부) →모집→국외취업자송출허가신청 →허가→여권발급→송출 및 취업 ※ 국외취업절차 (개별취업) • 외국고용주초청→현지공관장확인 →피초청장→지방노동관서→국외 취업자송출허가신청→허가→여권 발급→취업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송출허가제도를 폐지하여 국외취업 자유보장 및 국외진출 촉진 〈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제 15 조 ○ 동법시행령 제 7 조 ○ 동법시행규칙 제 11 조	
2. 기능인우대 시책제도화	〈실 태〉 ○ 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기능인의 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기능인의 우대제도 미흡 〈개선방향〉 ○ 기능장려법(가칭)제정 — 기능인의 날 및 기능장려주간 설정 — 우수기능인 선발 포상 —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제기획원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등에 대한 상금·장려연금 지급 〈관계법령〉 ○ 기능장려법(가칭)제정, 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개선	〈실 태〉 ○ '8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을 정하여 사업체에 권장('87.4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개정) · 기금재원 – 사업주가 당기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부금의 한도내에서 출연 · 기금용도 –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생활부조금등에 사용	경제기획원 재 무 부 상 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기금관리 —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 협의회에서 관리 • 세제지원 — 사업주의 기금출연 : 손금(필요 경비)확정 — 근로자 : 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상속세 증여세면제 ○ 기금의 설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호응없이는 기금설치 곤란 ○ 기금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 소득세 납부로 인하여 근로복지사용재원의 감소 ○ 사무실, 복지시설등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대표자 자연인 명의로 등기 하게되어 대표자 변경시 상속·	

증여세 납부문제 발생

○ '86년이후 경기호전으로 기업에서는 기금 설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에 대한 손금인정 한계(기부금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10%이내)등 기존 복지후생제도와의 중복등으로 사업주가 기금출연을 주저함

〈개선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가칭)제정

- 기금재원
  - 기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일정 비율로 출연
- 기금용도
  -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근로자 생활원조등으로 활용
- 기금운영
  - 독립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운영

○ 세법상 혜택을 독립적으로 받도록 추진

〈관계법령〉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table>
<tr><th>과 제 명</th><th>실 태 및 개 선 방 향</th><th>관련부처</th></tr>
<tr><td>1. 자동차폐차업 허가제도개선</td><td>〈실 태〉
○ 자동차 폐차업 허가 정수기준의 경직성으로 허가 과소지역 주민의 이용불편 초래 및 신규참여 희망자의 민원야기
– 자동차 폐차업 정수기준
<table>
<tr><th>서 울 시</th><th>직 할 시</th><th>도</th></tr>
<tr><td>등록자동차 14만대당 1개소</td><td>등록자동차 7만대당 1개소</td><td>등록자동차 3만5천대당 1개소</td></tr>
</table>
○ 폐차영업소의 설치제한으로 인한 도서·벽지·오지등 원거리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초래

〈개선방향〉
○ 자동차 폐차업 허가정수 기준을 현행보다 50%조정, 적용가능토록 개정
○ 폐차업자의 영업소 설치기준을</td><td>법 제 처
내 무 부</td></tr>
</table>

	자율화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소 설치 허용 – 다른 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 철폐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74 조, 제 175 조	
2. 수입자동차 형식승인 신청절차 간소화	〈실 태〉 ○ 수입자동차의 형식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의 과다 및 중복제출로 민원인 불편 초래 – 형식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 제원표등 7 종 – 동일차종의 경우에도 수입자마다 신청서류를 전량 (7 종) 제출 ○ 자동차 수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의무화로 실수요자에게 부담 가중 〈개선방향〉 ○ 형식승인 신청서류의 간소화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기승인 차종과 동일 차량 수입시 형식승인 신청 제출서류 일부면제 · 현행 7종 → 4종(3종 면제) ○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시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의무 면제로 수입자의 부담경감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51 조	
3. 개인택시면허 발급우선순위 제도 개선	〈실 태〉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일정한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자중에서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공급대수 범위내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면허발급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전국적인 동일적용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일부 우선순위에 개인택시 면허자 편중현상 초래	

	〈개선방향〉 ○ 개인택시 면허발급방법을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 위임 〈관계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5 조	
4. 항공시설사용료 징수방법 개선	〈실 태〉 ○ 현행 항공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은 –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계약에 의거 1개월 단위로 후불납부 –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 사업자 : 납부사유발생시마다 현금납부 ○ 부정기 및 사용사업 항공기 운항증가에 따른 징수업무 과다 ○ 운항승무원에 의한 현금납부로 항공기 운항지장, 금전사고등으로 납부자에게 불편초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항공시설사용료 후불납부 대상범위 확대 – 부정기 운송사업체, 항공기 사용사업체 추가 〈관계법령〉 ○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5.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계획승인 및 안전기준인정검사 업무 개선	〈실 태〉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승인 및 안정기준 인정검사 업무를 교통부장관이 관장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확보곤란 및 업무의 이중처리로 인한 행정낭비와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향〉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및 안전기준 인정 업무를 지방항공관리국장에게 위임	법 제 처 총 무 처

	〈관계법령〉 ○ 항공법 제 20 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 부영전력공급 승인절차개선	〈실 태〉 ○ 비행장구내의 교통부 자가용 전기 공작물 시설구역내의 항공업무에 관계있는 기관 및 업체가 전기 공급을 요청할시, 비행장을 경유하여 지방항공관리국장 승인하에 사용 – 민원인 → 비행장 → 지방항공관리국 → 민원인 ○ 비행장에서 부영전력사용신청서를 접수한후 서류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관리국에 승인 신청하므로써 처리기간 지연 〈개선방향〉 ○ 부영전력공급 승인권한을 지방항공관리국에서 비행장으로 하부위임토록 개선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관계법령〉 ○ 항공관계전기통신청원시설처리요령	
7. 민항공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대책 제도개선	〈실 태〉 ○ 격증하는 항공수요 증대에 따른 비행장 시설확충으로 인한 소음지역의 추가발생 및 확산 · '87:170회/일, '88:200-250회/일 · 소음피해지역(김포공항) — 서울시 : 강서구(공항동), 양천구(신월동) — 경기도 : 부천시(고강동, 오쇠동) 김포군(김포읍, 고촌면) — 인천직할시 : 계양동등 일부지역 ○ 소음공해로 인한 서면진정, 집단시위, 면담등 빈번한 항의가 있으나 근거법령 미비 (건축규제)로 민원해소 곤란 ※ 민원내용 — 집단이주단지조성 분양	경제기획원 내 무 부 (서울시, 경기도) 국 방 부 건 설 부 환 경 청

	– 가옥 및 토지는 인근지역 거래가 보상 –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 세입자 이주대책 등 〈개선방향〉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내의 가옥매입 보상, 이주대책 수립등 민원해소 – 건축규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계법령〉 ○ 비행장주변의 항공기소음대책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위험품수송시 호송인첨승 제도 개선	〈실 태〉 ○ 위험품류에 속한 산류의 수송시 호송인 첨승 · 위험품(산류) : 황산, 염산, 초산등 · 수송용기의 특성 — 탱크상단에 출구설치 — 용기의 이중제작(코팅) — 공기의 압축에 의한 적재로 분실, 유출 또는 누수위험이 없을 것 · 호송인 첨승 — 산류 1량마다 1인첨승 — 단, 송화인 및 착역이 동일시에는 5량마다 1인첨승 ○ 과다한 호송인 첨승으로 화주부담 가중 〈개선방향〉 ○ 수송용기의 안전도 향상에 따른 호송인 첨승인원의 축소로 화주부담	

경감

현 행	개 선
· 1량마다 1인 첨승 (단, 송화인 및 착역 동일시 5량마다 1인)	· 1열차당 1인 첨승

〈관계법령〉

○ 국유철도화물영업규칙 (철도청고시)

2. 디젤기관차 검수기준 및 세부작업 지침서제정

〈실 태〉

○ 현행 디젤기관차 검수규정(청훈령)은 포괄적규정으로 세부적, 구체적 검수기준 미비

〈개선방향〉

○ 디젤기관차의 검종별, 계통별 세부검수개소별 작업지침서 제정

– 체계적 책임검수 및 정밀검수 시행

– 검수종사원의 기술습득 지침서 역할수행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3. 철도전력의 청외공급승인 절차개선	〈관계법령〉 ○ 디젤기관차 검수규정 〈실 태〉 ○ 10 kw이상의 철도전력을 청외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경우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인절차의 복잡 및 행정소요일수 과다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향〉 ○ 청외자에 대한 10 kw 이상의 철도전력 사용 승인권한을 지방철도청장 및 철도차량 정비창장에게 위임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총 무 처
4. 철도신호보안 설비공사 시행절차 개선	〈실 태〉 ○ 철도전기·신호보안설비는 철도특유의 신호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동력자원부

	고난도 공사임 ○ 신호보안설비공사를 "신호보안기사"가 아닌 "전기공사기사"에 의거시행 ○ 신호보안분야와 일반 전기분야기술은 별도 구분이 필요함 ○ 전문성 결여로 부실공사 우려 ○ 건전한 공사업체 육성 저해 〈신호보안기사 미활용〉 〈개선방향〉 ○ 철도신호보안설비를 "신호보안기사" 보유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면허기준에 "신호보안기사" 추가보유 〈관계법령〉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정박료부과 제도개선	〈실 태〉 ○ 접안료 징수대상 — 안벽·물양장·잔교등에 접안 또는 계류하거나 동접안 계류선박에 계선한 선박 ○ 정박료 징수대상 — 접안료 징수대상 이외의 장소에서 묘박 또는 정박한 선박 ○ 정박료 징수 제도의 불합리로 민원인 불만초래 〈개선방향〉 ○ 정박료 제도를 폐지하여 접안료로 통합흡수 ○ 묘박지 사용선박에 한해 접안료의 2/1을 징수 — 국가불귀속 사설접안시에 접안·하역하는 선박 — 수출입화물의 선적·양하이외 목적으로 입항후 정박하는 선박	

	– 해상정박 하역선박등 〈관계법령〉 ○ 항만시설 사용규칙	
2.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제도 개선	〈실 태〉 ○ 현행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 5년 · 유효기간내 갱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 실효 · 갱신요건 – 유효기간중 1년이상 승선 – 특정직무에 3년이상 종사 – 갱신교육이수등 ○ 갱신요건 미비시 면허효력 상실 –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상실 – 민원인 불이익에 따른 불만초래 〈개선방향〉 ○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내(5년) 갱신요건 미비시 면허 효력상실 →효력정지 조치로 완화	교 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3. 해기사면허 취소요건축소	〈관계법령〉 ○ 선박직원법 제7조, 제8조 〈실 태〉 ○ 해기사 면허취소 사유에 선박직원법외에 "선박직원으로서 관세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포함 ○ 해기사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을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함으로서 해기사 권익보호상 불합리 〈개선방향〉 ○ 해기사 면허취소사유에 선박직원법외의 타법령 적용 삭제 — 선박직원으로서 관세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때 〈관계법령〉 ○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교 통 부

4. 해기사면허 취득요건완화	〈실 태〉 ○ 해기사 면허요건 –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가 있을것 ○ 면허요건(1년) 충족시한이 짧아 민원인 불만초래 ○ 승선중인 자는 건강진단서가 유효기간중에 있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에도 또 건강진단서를 요구함으로써 선원불만 (제3자 면허신청 불가) 〈개선방향〉 ○ 면허요건 구비완화 및 건강진단서 징구제도 개선 –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	교 통 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승선중인 자는 선주발행 승선 확인서로 건강진단서 대체 〈 관계법령 〉 ○ 선박직원법 제 5 조제 1 항 1 호 및 3 호	

체 신 부

<table>
<tr><th>과 제 명</th><th>실 태 및 개 선 방 향</th><th>관련부처</th></tr>
<tr><td>1. 제 3, 4 종 우편물의 개봉 발송 제도 개선</td><td>〈 실 태 〉
○ 제 3, 4 종 우편물의 다량발송시 5 cm이상 개봉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제 4 종 우편물중 잠종은 우체국장의 승인하에 봉함하여 발송
※ 통상우편물의 종류
<table>
<tr><th colspan="2">종 류</th><th>구 분</th></tr>
<tr><td colspan="2">제 1 종(봉서)</td><td>규격봉서, 규격외봉서</td></tr>
<tr><td colspan="2">제 2 종(우편엽서</td><td>통상엽서, 왕복엽서, 봉합엽서, 소포엽서, 광고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td></tr>
<tr><td rowspan="2">제 3 종</td><td>가급</td><td>월 4 회이상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중 언론기본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 및 신문과 판보규정에 의한 관보로서의 관할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td></tr>
<tr><td>나급</td><td>월 1 회이상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가급외의 정기간행물로서 관할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td></tr>
<tr><td colspan="2">제 4 종</td><td>서적, 인쇄물, 상품의 견본과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농산물 종자, 잠종</td></tr>
</table>
○ 제 3, 4 종 우편물의 개봉발송으로 인한 우편물의 파손 및 오염으로</td><td></td></tr>
</table>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이용자의 불만 초래 〈개선방향〉 ○ 제 3, 4 종 우편물은 개봉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잡종과 동일인이 동일한 우편물을 20 통이상 발송할 경우 발송우체국장의 승인하에 봉함 가능토록 개선 〈관계법령〉 ○ 우편법시행규칙 제 35 조 제 2 항	
2. 내용증명 우편물의 구비요건 완화	〈실 태〉 ○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제도임.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규격은 16 절 용지로 (190 × 268 ㎜) 한쪽면만 작성토록 하므로서 이용자의 불편 초래	

	〈개선방향〉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규격중 투명하지 않은 16절용지를 사용할 경우 전·후면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요금은 2매요금으로 징수 〈관계법령〉 ○ 우편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3. 요금부족, 미납국제우편물 처리제도 개선	〈실 태〉 ○ 현행요금부족·미납국제우편물의 처리는 – 발송우편물 : 발송인에게 반송, 부족, 미납요금의 추징후 발송 – 도착우편물 : 부족요금추징 및 취급수수료 (250원) 징수 ○ 국제우편물의 송달지연 및 취급업무량 증가와 이용자의 불편 및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부담가중 〈개선방향〉 ○ 요금부족·미납국제우편물의 처리제도 개선 · 발송우편물의 경우 - 보통통상우편물 : 요금부족액 표시 (T처리)로 발송조치 - 등기·소포 : 우편발송후 부족요금 추징 · 도착우편물의 경우 - 취급수수료 징수제도 폐지 - 부족요금만 징수 〈관계법령〉 ○ 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4. 장애자등에 대한 통신 요금감면제도	〈실 태〉 ○ 신체장애자등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도 다른	

신설	이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통신요금등의 감면 - 인명·재산의 위험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통신 - 군사·치안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전용회선통신 - 전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통신 - 신문사·통신사 또는 방송사업자의 보도용 통신 - 통신사업영업상 필요로 하는 통신 〈개선방향〉 ○ 신체장애자등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 요금에 대한 요금감면 근거규정 신설 - 전보요금·전화요금·도수료 등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관계법령〉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 57 조 ○ 동법시행령 제 101 조 내지 제 113 조	
5. 공중통신 설비설치시 타인의 토지등 사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	〈실 태〉 ○ 공사가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 또는 일시 사용할 수 있음. ○ 공사는 법 제 63 조 및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난때 또는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 원상회복의무 -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때에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는 사용료지급의무 및 절차만 가능	

	〈개선방향〉 ○ 타인 토지등의 장기사용에 따른 정당보상 근거규정 신설 〈관계법령〉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 63 조, 제 64 조 제 71 조	
6. 구내무선 호출국 허가 조건 개선	〈실 태〉 ○ 일정구내의 호출용으로 구내전용 무선호출국 허가 • 허가조건 - 무선기기 형식검정을 필한 기기 - 톤 또는 디지틀 신호만을 전송 - 출력 : 50 w 이내 - 사용주파수 : 27 MHZ 대등 7 파 - 안테나높이 : 10 m이하 ○ 음성신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톤신호 및 음성신호 병용기기의 활용곤란 - 통화범위의 제한으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구내전용 무선호출국의 허가조건 완화 - 음성신호사용 허용 - 사용주파수의 확대 - 통화범위의 확대 〈관계법령〉 ○ 무선호출국의 기술기준(체신부고시) ○ 무선기기 형식검정 기준(체신부 고시)	
7.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시행절차개선	〈실 태〉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시행절차 • 대상자격 : 특수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아마츄어 무선기사 • 출제문제관리 : 문제은행식 • 출제형식 - 필기시험 : 영어(주관식), 기타(객관식)	

- 실기시험 : 전기통신술

• 시행관서

- 문제출제 : 체신부
- 검정시행 : 체신청

○ 검정문제의 출제형식, 및 채점기준상의 객관성 미흡

- 자격검정 시행절차의 미비

〈개선방향〉

○ 영어시험을 객관식으로 시행하고 문항수 및 시험시간 조정

○ 실기검정계획을 검정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수험자의 편의도모

○ 실기시험의 접수, 진행, 채점절차 보완

○ 관련서식의 본적란, 우무인란 삭제

○ 맹인응시자에게 특례절차 규정

〈관계법령〉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시행세칙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8. 개인아마츄어 무선국 이동 운용제도 개선	〈실 태〉 ○ 개인 아마츄어 무선국의 이동운용 금지 ○ 단체국에 한하여 고정지점간 이동 운용허용 ○ 개인국 운용자의 이동운용불허로 아마츄어 무선사의 불만고조 – 비상사태 및 재해 발생시 활용기회 상실 〈개선방안〉 ○ 개인 아마츄어 무선국의 이동운용 허용요건 설정 – 운용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최근 3년이내에 무선국 운용정지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관계법령〉 ○ 행정지침	

문화공보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 개·폐	〈실 태〉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배제)에 규정한 이외의 사회단체를 조직한 경우, 그 대표자는 당해 단체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 - 종교단체 - 학술의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인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사회단체 등록제도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성 논란등 각종 문제 제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 등록거부시 민원인 불만해소 곤란 - 등록자체를 정부의 공신력 획득으로 악용하는 사례등 〈개선방향〉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폐지 또는 개정 -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단체의 자율성 및 창의적 활동 보장 〈관계법령〉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2. 문화재 수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연장	〈실 태〉 ○ 문화재수리업자는 매년 1회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수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유효기간이 짧아 동일 구비서류의 매년 제출등으로 인한 불편초래 및	법제처 총무처 건설부 노동부

	문화재수리업자의 전문성 결여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구비서류 -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보유현황 - 건설업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면허증 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경우)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사본(실측·설계업의 경우) - 등기부 등본 〈개선방향〉 ○ 매년 1회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3년에 1회 등록하도록 개정 ○ 등록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문화재 수리업자의 불편해소 및 전문성 확보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1. 옥상광고물 설치규제 완화	〈실 태〉 ○ 현행 광고물등 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설치허용 - 상업지역 : 설치규제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향〉 ○ 현행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옥상 광고물을 상업지역에도 설치가능토록 규제 완화 〈관계법령〉 ○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내 무 부
2. 분뇨처리운영 제도 개선	〈실 태〉 ○ 시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뇨를 서부, 동부, 북부위생처리장에서 처리 ○ 분뇨처리장의 지역편중으로 불합리한 수거운반체계 및 혐오차량의	

	도심통과로 교통집중현상 유발 〈개선방향〉 ○ 당해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동수계하수처리장에서 하수와 혼합처리토록 개선 〈관계법령〉 ○ 행정지침	
3. 양곡중매업 허가증교부 절차개선	〈실 태〉 ○ 양곡중매업허가증 교부절차 - 민원인이 본청시민과에 양곡중매업허가 신청서 접수 - 본청시민과에서 본청양정과로 이송 - 본청양정과에서 허가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관할구청 및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면허고지세 납부후 본청시민과에서 허가증 수령 ○ 복잡한 처리절차로 민원인 불편초래	농림수산부

과 제 명	실 태 및 개 선 방 향	관련부처
	〈개선방향〉 ○ 양곡중매업 허가증 교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이 구청에서 면허고지세를 납부한후 구청에서 직접허가증을 수령토록 개선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3 조	